

구강보건

#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본 지침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구강보건」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서이며 인력 및 예산집행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 구강보건사업 개요

I. 사업개요	2
---------	---

## 제2장

### 세부사업 내용

I.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16
II. 불소용액 양치	23
III. 어린이 불소도포	29
IV.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35
V.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설치·운영	39
VI.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45
VII.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52
VIII.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62
IX.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	73
X.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80

## 제3장

### 실적보고

I. 실적보고	84
---------	----

## 제4장

### 부록

I.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92
II.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96
III.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97
IV.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지침 및 주요지표 산출방법	99
V. 양치시설 표준설계안	112
VI.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120

## 참 고 서 식


NO	제 목	page
참고 1	불소용액양치 실시 지도방법(학교 실무자용)	28
참고 2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실시 안내	33
참고 3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34
참고 4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실시 안내	37
참고 5	노인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38
참고 6	학교양치시설 설치완료 보고	49
참고 7	구강진료 동의서(표준안)	58
참고 8	구강진료결과보고서(표준안)	59
참고 9	(초등)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60
참고 10	(특수)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61
참고 11	불화물첨가시설점검기록부(시행규칙 제 9 조 제 2 항 관련)	69
참고 12	불소농도측정일지(시행규칙 제 7 조 제 3 항 관련)	70
참고 13	불소농도측정기록부(시행규칙 제 9 조 제 1 항 관련)	71
참고 14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측정 불소농도	72
참고 15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78
참고 16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79

주요 변경내용

구분 분류		2020년 (개정 전)	2021년 (개정 후)	쪽
개요	I. 사업개요	▶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 통계자료 등 업데이트	2~10
내용	I.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 [표 7] 구강보건 홍보매체	▶ [표 7] 구강보건 홍보매체 • 자료 목록 보완·정리	22
	VII.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 구강보건실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지원 • 대상 : 특수학교, 초등학교 • 교체수리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25%, 교육재정 25%(학교 당 최대 28,000천원까지) * 2018년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선정 지자체는 지방비와 교육청(학교)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예산 확보 -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 ('21년 예산 28,000천원) • 교체대상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 도과 또는 노후, 파손된 진료장비'	57
	VIII.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 [참고 11] 불화물첨가시설점검기록부	▶ [참고 11] 불화물첨가시설점검기록부 •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화합물 명칭 변경	69
	IX.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사업	▶ [참고 19]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 [참고 16]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 설치 현황 업데이트	79
부록	III.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	▶ 보건소, 보건지소	▶ 보건소, 보건지소 •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배치 기준 변경	97~98

주: 일부 편집 및 문구 조정사항은 상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음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구강보건 |

---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1

# 구강보건사업 개요

I 사업개요

# I 사업개요

## 1 구강보건사업의 필요성

### 1 지속적인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

- 우리나라의 12세 아동이 경험한 평균 우식치아(충치) 개수는 1.8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2개 보다 많은 수준으로 치아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다소 정체 중인 상황(표 1, 그림 1).
- 영구치 우식증은 만 6세부터 증가하여 20세 무렵에 이르면 경험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험함에 따라 우식 발생 전에 예방적 개입이 매우 중요함.
- 1970~1980년대에 칫솔질 등 개인 구강건강관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치주질환 유병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지속적 개입이 필요함(그림 2).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년도(2018). 보건복지부. 2018년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2019.

[표 1] 세계 각 지역별 12세 1인당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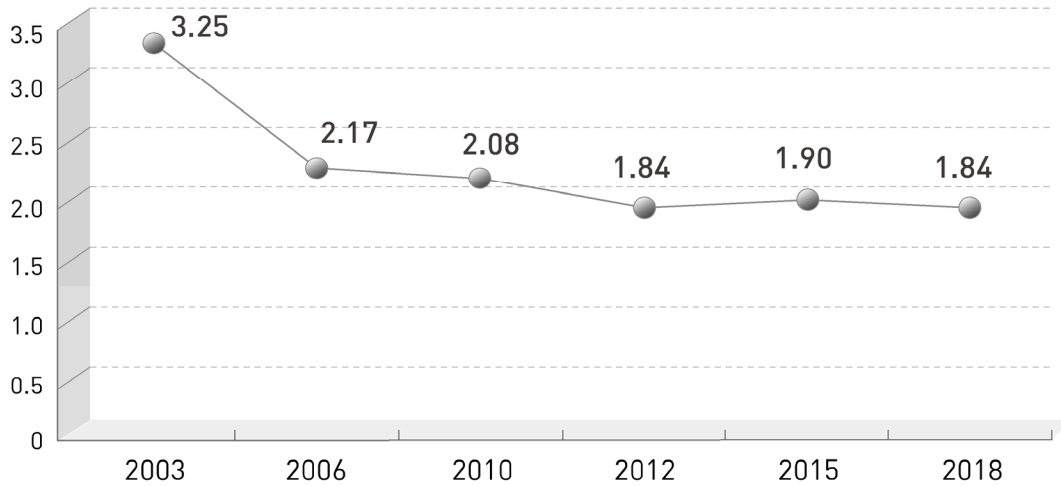
지역(WHO 분류 기준)	12세 1인 평균보유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DMFT)			
	2004년	2011년	2015년	2018년
아프리카(AFRO)	1.15	1.19	1.06	1.4
미주(AMRO)	2.76	2.35	2.08	2.3
중동(EMRO)	1.58	1.63	1.64	1.6
유럽(EURO)	2.57	1.95	1.81	2.3
동남아시아(SEARO)	1.12	1.87	2.97	1.3
서태평양(WPRO)	1.48	1.39	1.05	1.8
<b>세계 평균</b>	<b>1.61</b>	<b>1.67</b>	<b>1.86</b>	<b>1.9</b>

※ 자료 : MALMÖ university. Oral Health Country/Area Profile Project: DMFT for 12 year olds. Available from : <https://capp.mau.se/dental-caries/>



[그림 1] 1인당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 추이(2003-2018) : 만 12세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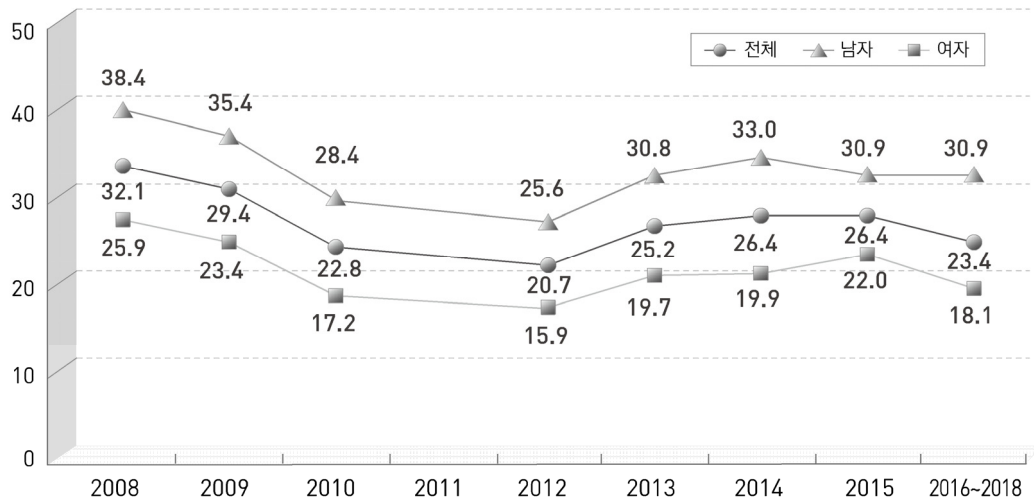
(단위 : 개)



※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前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003-2018

[그림 2] 치주질환 유병률 추이 : 만 19세 이상

(단위 : %)



※ 2016~2018년 통합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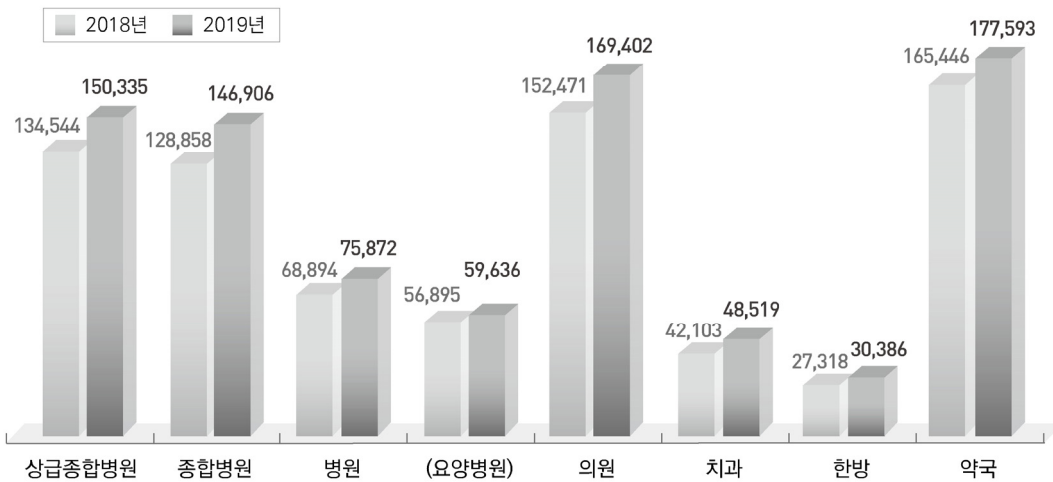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년도(2018).

## 2 구강질환에 따른 개인 및 사회적 부담 가중

- '19년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 치과가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그림 3). 구강질환의 경우 타 질환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으므로, 비급여 구강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상황임.
- '19년 치과 병·의원 요양급여 비용은 4조 8,519억 원으로, 이는 '18년 대비 약 15.2% 증가한 비용이며, '19년 총 급여비용 86조 277억 원의 약 5.6%를 차지함(그림 3).

[그림 3]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비용

(단위 : 억 원)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진료비 주요통계.

- '19년 외래 다빈도 질병 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
  - 진료 인원에 따른 질병 순위를 보면, 10순위 내에 구강관련 질병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 (약 1,683만명, 1위), 치아우식(약 644만명, 4위) 2개 질병이 포함됨(표 2).
  - 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질병 순위를 보면,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위(약 1조 5,784억 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 2위(약 1조 5,344억 원),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7위(약 5,956억 원), 치아우식 9위(약 5,504억 원)로 나타남.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18년 대비 요양급여비용이 12.9%, 치아우식은 48.8% 증가함(표 3).

[표 2] 2019년 외래 다빈도 질병 순위별 현황

순위	질병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용 (백만원)	1인당 진료비(원)	'18년대비 진료비 증감률(%)
1	치은염 및 치주질환	16,834,508	34,628,006	1,534,421	91,147	12.9
2	급성 기관지염	16,080,879	56,707,894	906,245	56,355	0.7
3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7,039,798	17,028,997	292,811	41,594	4.6
4	치아우식	6,441,853	11,164,092	550,447	85,449	48.8
5	분태성(원발성) 고혈압	6,272,010	44,654,442	880,023	140,310	8.1
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5,651,775	11,242,998	190,481	33,703	-2.2
7	등통증	5,379,800	24,658,244	776,090	144,260	12.9
8	위염 및 십이지장염	5,213,367	9,343,249	266,910	51,197	8.8
9	급성 편도염	5,105,304	9,876,848	169,727	33,245	-9.1
10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4,661,484	9,338,656	159,506	34,218	5.6

\* 다빈도 순위는 질병별 진료인원 기준

\*\* 증감률은 전년 대비 요양급여비용의 증감률임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진료비 주요통계.

[표 3] 2019년 외래 다빈도 질병(50 위권 이내) 중 요양급여비용 순위 현황

순위	질병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용 (백만원)	1인당 진료비(원)	'18년대비 진료비 증감률(%)
1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533,762	4,244,784	1,578,453	1,029,138	15.8
2	치은염 및 치주질환	16,834,508	34,628,006	1,534,421	91,147	12.9
3	급성 기관지염	16,080,879	56,707,894	906,245	56,355	0.7
4	분태성(원발성) 고혈압	6,272,010	44,654,442	880,023	140,310	8.1
5	등통증	5,379,800	24,658,244	776,090	144,260	12.9
6	무릎관절증	2,935,633	17,764,214	619,102	210,892	8.2
7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4,212,111	14,114,621	595,582	141,398	1.2
8	2형 당뇨병	2,884,940	20,099,442	563,104	195,188	11.0
9	치아우식	6,441,853	11,164,092	550,447	85,449	48.8
10	기타 척추병증	1,768,811	11,080,481	401,737	227,123	10.0

\* 다빈도 순위는 질병별 요양급여비용 기준

\*\* 증감률은 전년 대비 요양급여비용의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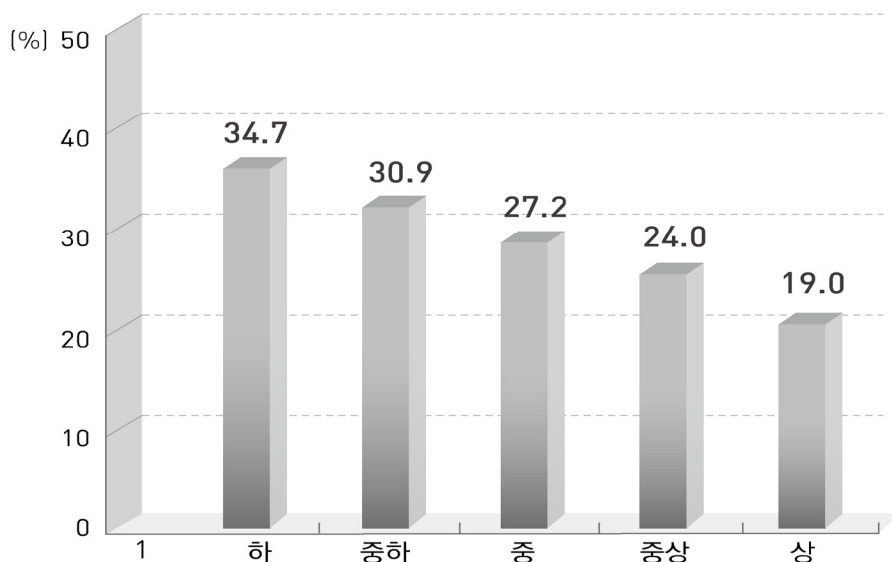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진료비 주요통계.

### 3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

- 인구 집단 간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취약한 치과의료 이용의 격차를 초래하여 구강건강 불평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만19세 이상 성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치아우식 유병률의 차이가 나타남 (그림 4, 5).
  -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영구치 우식 유병률이 높은 경향(소득 오분위 상(19.0%), 하(34.7%))을 보임
-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경향(소득 오분위 상(24.0%), 하(42.4%))을 보이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치과 미충족 의료율에도 차이가 나타남 (그림 6).

[그림 4] 소득수준별 영구치우식 유병률(2016-2018) : 만 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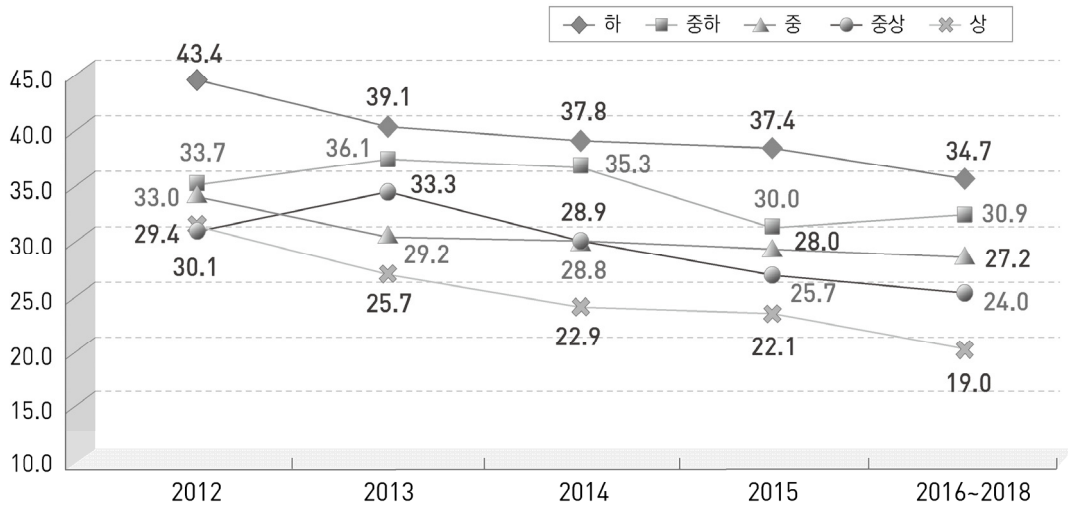
(단위 : %)



※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 연령별(5세단위) 오분위로 분류  
 ※ 2016~2018년 통합산출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년도(2018).

[그림 5] 소득수준에 따른 영구치우식 유병률 추이(2011-2015) : 만 19세 이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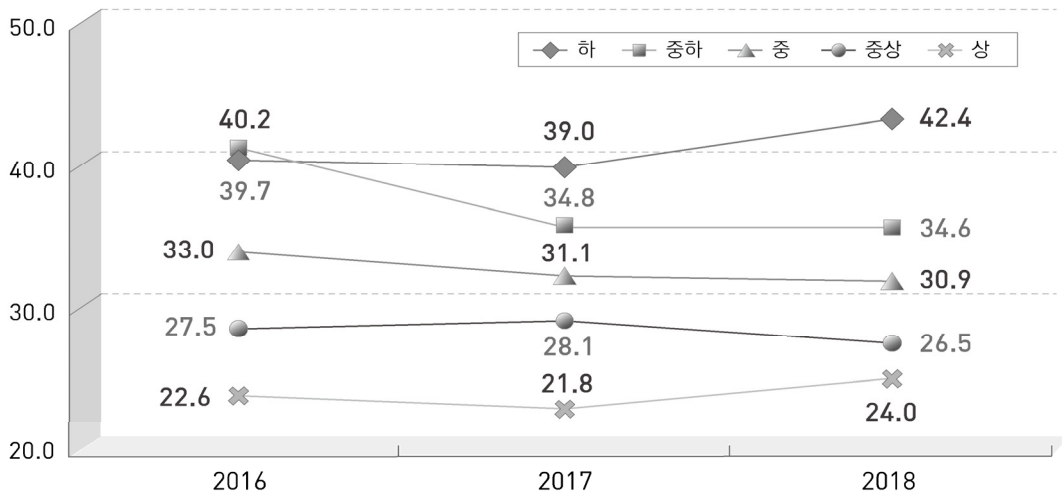
※ 영구치우식 유병률 : 치료를 완료하지 않거나 발거하지 않은 영구치 우식증(충치)을 현재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을

※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오분위로 분류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년도(2018).

[그림 6] 연간 미충족 의료율(치과) 추이(2011-2015) : 만 19세 이상

(단위 : %)



※ 연간미충족의료율(치과) :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을

※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오분위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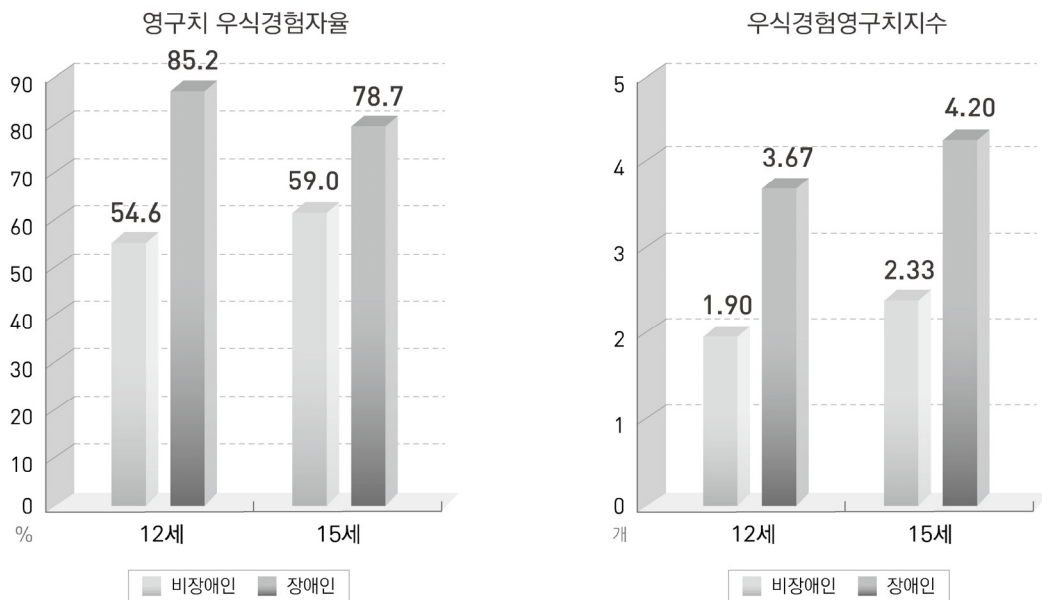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년도(2018).

- '18년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나타남. 치주질환은 진행되면 조기 치아상실로 이어져 음식물 저작이 어렵고 영양섭취 제한이나 소화기 장애 유발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함.

※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18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 장애 유무에 따른 영구치 우식을 비교해본 결과, 장애 아동의 치아우식 경험상태가 비장애 아동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 진료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그림 7).

[그림 7] 장애 유무에 따른 치아우식 경험 상태 비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5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 4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관리

-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이 다수 치아를 상실하여 씹기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노인 구강질환 예방 사업은 필수적임.
- 정부에서는 '02년도부터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틀니제공사업과 불소도포·스케일링 제공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급증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을 지속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20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12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

- '18년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불편 호소율은 38.1%이며, '16~'18년 65세 이상 노인의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53.3%, 의치필요자율은 18.8%, 70세 이상 노인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47.9%로 나타남. 반면, '18년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검진율은 27.6%에 그쳐 노인에게 대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함.

※ 의치의 경우 원래 자연치아의 저작기능을 그대로 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9년 노인(65세 이상) 외래 다빈도 질병 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

- 진료 인원 에 따라 외래 다빈도 질병 순위를 보면, 10순위 내에 구강관련 질병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약 289만명, 1위),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약 116만명, 8위) 2개 질병이 포함됨(표 4).

※ 자료 :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202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8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3차년도(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진료비 주요통계.



[표 4] 2019년 노인(65세 이상) 외래 다빈도 질병 순위별 현황

외 래	순위	질병명	진료인원 (명)	내원일수 (일)	요양급여 비용 (백만원)	1인당 진료비 (원)	'18년대비 진료비 증감률(%)
	1	치은염 및 치주질환	2,889,120	7,128,112	266,945	92,396	19.4
	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815,227	21,266,896	424,131	150,656	8.4
	3	급성 기관지염	2,042,806	5,748,746	91,606	44,843	-0.8
	4	등통증	1,594,585	11,372,556	306,816	192,411	11.5
	5	무릎관절증	1,591,002	11,203,082	377,341	237,172	9.4
	6	2형 당뇨병	1,290,240	9,397,445	248,257	192,412	12.3
	7	위염 및 십이지장염	1,165,223	2,695,279	64,947	55,738	10.4
	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1,161,273	3,679,372	1,561,541	1,344,680	16.0
	9	위-식도역류병	1,149,861	3,132,988	79,246	68,918	14.3
10	기타 척추병증	1,106,720	8,155,219	279,375	252,435	11.1	

\* 다빈도 순위는 질병별 진료인원 기준

\*\* 증감률은 전년 대비 요양급여비용의 증감률임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진료비 주요통계.

## 5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밀접한 연관성

- 구강질환 중 특히 치주질환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 구강건강은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필요

※ 자료 : WHO 홈페이지(www.who.int)



## 2 구강보건사업 정책방향

### 1 기본방향

- 국가 구강보건 정책 및 구강보건사업의 수립·시행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그림 8] 제 1 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

비전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17~2021년)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
목적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불평등 완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li> <li>·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li> <li>·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li> </ul>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li>②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li> </ul> </li> <li>2.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생활밀착형 구강질환 예방 강화</li> <li>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증진</li> </ul> </li> <li>3.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 사업 확대</li> <li>② 구강보건 시설 확충 및 내실화</li> </ul> </li> <li>4.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단위 구강보건 실태조사 및 전략지표 산출</li> <li>② 구강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li> <li>③ 구강보건사업 인프라 정비</li> </ul> </li> </ol>

## 2 성과지표

### 1 구강건강증진 및 예방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 표	현황 (2015)	목표치 (2021)	증감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37.1%	46.4%	9.3%p
성인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30.9%	38.6%	7.7%p
아동·청소년(6-18 세)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14.0%	17.5%	3.5%p
성인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 이용률	16.6%	20.8%	4.2%p
유치(5 세) 치아우식 경험률	64.4%	46.0%	-18.4%p
영구치(12 세) 치아우식 경험률	54.6%	45.0%	- 9.6%p
성인(35-44 세) 치면세마 필요자율	63.7%	50.0%	-13.7%p

주: 성인 국가구강검진수검률 최근 5개년 추이에 따른 매년 평균 상승률(3.6%)을 기준으로 추계한 상승률(24%) 반영하여 목표치 산정(2015년도 대비 25% 상승)

### 2 구강건강생활 실천도 향상

지 표	현황 (2015)	목표치 (2021)	증감
아동(7-12 세)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44.1%	50.0%	5.9%p
중·고등학생(13-18 세)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39.4%	50.0%	10.6%p
성인(19 세이상)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48.3%	62.8%	14.5%p

주: 성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5개년 추이에 따른 매년 평균 상승률(4.8%)을 기준으로 추계한 상승률(32%) 반영하여 목표치 산정(2015년도 대비 30% 상승)

### 3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향상

지 표	현황 (2015)	목표치 (2021)	증감
노인(65 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	43.3%	39.0%	-4.3%p


주: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 5개년 추이에 따른 매년 평균 감소율(2.2%)을 기준으로 추계한 감소율(12%) 반영하여 목표치 산정(2015년도 대비 10% 감소)

4] 향상 목표별 격차 완화				
지 표	구분	현황 (2015)	목표치 (2021)	증감
아동·청소년(6-18 세) 치아홈메우기 이용률 격차	소득	23.0% (3.0~26.0)	18.4%	-4.6%p
	장애	7.0% (7.0~14.0)	5.6%	-1.4%p
	지역	20.0% (4.0~24.0)	16.0%	-4.0%p
성인 스케일링(전악 치석제거) 이용률 격차	소득	20.9% (7.3~28.2)	16.7%	-4.2%p
	장애	8.1% (8.9~17.0)	6.5%	-1.6%p
	지역	16.9% (8.0~24.9)	13.5%	-3.4%p

5] 구강보건(치과의료) 인프라 확충			
지 표	현황 (2016)	목표치 (2021)	증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확충	8 개소	17 개소	9 개소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추가 확충	53 개소	135 개소	82 개소

구강건강관련 참고자료

1.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보고서(2000, 2003, 2006, 2010, 2012, 2015, 2018)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문의 043-719-7478, 7468)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4차 2016-2020, 5차 2020-203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주요계획'에 공개)
3.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knhanes.cdc.go.kr)에 공개)
4.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 공개)
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홈페이지(http://yhs.cdc.go.kr)에 공개)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구강보건 |

---

## 세부사업 내용

- ①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 ② 불소용액 양치
- ③ 어린이 불소도포
- ④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 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⑥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 ⑦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⑧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 ⑨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
- ⑩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 I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 1 목적

-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의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을 독려하고 위험행태를 개선하고자 함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4조의2, 제5조,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9조, 제1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 3 사업대상

-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 별 전체 주민
  - ※ 지역사회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세분화 가능
  - \* 예 : 노인(경로당, 노인대학, day care center 등), 성인(임산부, 군인 등),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등), 아동(유아, 초등학생 등)

### 4 사업추진방법

#### 1 구강보건교육

- 교육 방법
  - 직접교육 : 교육자가 학습자와 대면하여 수행하는 교육
  - 간접교육 : 교육자와 학습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책자나 리플릿, 유·무선 방송과 같은 구강보건교육매체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교육
-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관리용품 제공 가능

## ● 교육 내용

-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질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
- 구강건강습관을 실천하고 구강건강 위험행태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 및 예방법 습득 기회 제공

## ● 추진 사례

- 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 강화
  -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 전문가 참여 강화
    - : 보건소 인력(사업 담당자 또는 기간제 전문 인력), 지역 내에서 양성된 구강보건 교육자(인력풀 확보, 유급강사 활용), 지역 내 구강보건전문가(대학, 민간 병(의)원 등)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 지원자 양성 및 주민 자조모임 지원
    - :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구강보건 자원봉사인력을 구강보건교육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 하고,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 하는 주민의 수 확대

## 【 구강보건 자원봉사인력 대상 】

- 기관 보건 책임자(학교장, 보건교사, 사업장 보건책임자 등)
- 유아교육기관 교사
-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가진 자(이장, 통반장, 부녀회장 등)
-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 구강보건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및 일반 지역주민

## - 구강도서관 운영

- 구강보건교육에 활용 가능한 출판·영상물을 배치하여 유아 교육기관 또는 개인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여함으로써 구강보건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

## - 구강보건교육에 활용 가능한 출판·영상물 선정

※ 분실 및 대여기간의 회전 정도를 고려하여 한 종류의 출판·영상물을 다수 준비

**【 선정 기준 】**

- 수록된 내용이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에 오류가 없을 것
- 아동 도서의 경우 그림이나 내용이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 아동의 성장 발달 단계에 적합 할 것
- 성인 도서의 경우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내용에 치우치거나 어렵지 않을 것
- 영상물의 경우 녹음 상태나 편집, 해상도가 양호할 것
- 영상물의 경우 보편적 기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가능할 것

- 홍보 :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
- 구강보건교육 매체 대여 : 매체 대여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
- 소감문 작성 및 평가 : 매체 대출 후 소감문 작성
  - ※ 소감문은 구강도서관 운영 평가 도구 및 구강보건주간 시상 및 전시 작품으로 활용

**2 구강보건홍보**

● 홍보 방법

- 대중매체,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 홍보 내용

- 구강보건의 날 의미, 구강건강관리 정보, 구강보건 서비스 참여 등

● 추진 사례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자료 개발 및 홍보강화
  - 지역 대중매체사와 협의체 구축 : 일정 기간별(분기별, 월별, 연 2회 등) 구강보건 사업 안내 및 성과 연재
  - 지역보건기관(보건소) 홈페이지 내 구강보건홍보 게시판을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구강보건사업(사업안내, 성과, 교육 안내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기획·운영
  - \* 관련법령 : 구강보건법 제 4 조의 2 (구강보건의 날)
- 불소 활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표 5]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자	매체	구분	제작		자료 활용
			발행기관	연도	
전 생애	국민 구강건강 길라잡이 (건강한 삶을 위한 구강건강 생활수칙)	소책자, 포스터, 인포그래픽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치아우식 예방을 위한 식이조절용 컴퓨터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6	대한구강보건협회 문의
임산부· 영아	영유아 및 임산부(부모) 구강건강관리 교육용 앱(APP)개발 '맘스투스'	앱(APP)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7	구글 플레이스토어
	유아용 식이조절 관련 애니메이션 (교육용 악치손 인형, 교육용 칠판 포함)	USB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 Hello, Baby!	안내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내 아이 치아건강을 위한 런닝맘	매뉴얼, CD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임산부·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교안, PPT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아동	치면세균막 관리 교육자료 동영상	영상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6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바른양치실천 교육 및 홍보매체 '후토스 치카치카조아'	영상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치아우식 예방 애니메이션	USB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아건강 몸건강 하얀치아 밝은 미소 (초등학생용)	교안, CD, 매뉴얼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어린이 치아건강 노래&울동 '이치카 아푸카'	CD, 리플렛	보건복지부	2011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플래쉬 동화 '호랑이의 치카푸카 여행'	CD	보건복지부	2011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치아건강 보물상자Ⅲ	CD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9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치아건강 보물상자Ⅱ	CD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8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치아건강 보물상자Ⅰ	CD	보건복지가족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7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교육 대상자	매체	구분	제작		자료 활용
			발행기관	연도	
	예쁜이의 약속	CD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6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6 세구치 여섯 살에 태어나는 영구치아	CD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5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청소년	너의 치아는 안녕하니?	PPT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9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청소년 구강건강 교육 프로그램(영상 3 편)	영상	보건복지부	2013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성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자료 : 동영상(4개국어 번역더빙) 및 플래그 키트 (치면착색제 20 개)	CD, 플래그 키트, 교안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5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구강증상에 관한 PPT(동영상 포함)	USB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주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PPT(동영상 포함)	USB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치아건강 몸건강 하얀치아 밝은미소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용)	교안, CD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한국건강증진개발 원 홈페이지
노인	구강보건 관련 동영상(틀니, 보철)	USB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4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노년기 구강관리	CD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06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자료 (시각장애인 : 점자책자 / 청각장애인 : 수화가 포함된 영상물 / 정신지체장애인용 : 영상물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용 : 영상물)	USB, 교안	보건복지부 대한구강보건협회	2015	대한구강보건협회 홈페이지
	해피데이	CD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0	국가건강정보포털 (질병관리본부)

\*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cdc.go.kr>) - 보건교육 자료실 - 구강보건정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https://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자료' 또는 '홍보자료'

\* 대한구강보건협회(<https://www.dental.or.kr>) - 구강보건교육 자료실

\* 맘스투스(app)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hinhan.momstooth>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맘스투스'로 검색

※ 일부 자료의 경우 이미지 저작권 등으로 온라인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며, 발행기관으로 별도 활용 문의 요망

[표 6] 교육사례

교육대상자		교육 사례
임산부·영아		- 타 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사업 및 영양플러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구강보건교육 실시  <b>【 사례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과 연계 : 임산부 등 성인에 대한 치주관리 사업(취약계층 우선) 적극 실시 (예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정책과 지역사회 내 여성건강관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임산부·영유아 구강건강을 위한 치주관리 프로그램(부제 : Hello, Baby!)' 활용)</li> <li>영양플러스 사업과의 연계 : 영양과 구강건강의 밀접한 관계,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전신건강의 선형조건 등</li> <li>북스타트 사업과의 연계 : 동화연구가가 구강보건동화를 구연하고, 구강건강 체험 학습은 구강보건사업 담당자가 진행</li> </ul>
유아	유아, 원장, 교사	- 유아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구강보건교육 실시 -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구강보건교육의 장 마련
초등학생	학생, 학교장, 보건교사, 학부모	- 학령을 고려한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교육 강화 : 매년 상반기 중(3-5 월 권고)에 학부모와 보건교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교육청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 학교장, 관리자 교육
청소년	학생, 학교장, 보건교사, 학부모	- 학교 방문을 통한 구강보건교육 실시 -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 구강보건사업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역량 강화 - 연 2 회 지역 내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으로 발송되는 보건신문 혹은 가정 통신문을 통해 구강보건사업 홍보(기 개발·보급된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예 : 수도물불소농도 조정사업 홍보 가정통신문 등 - 교육 강화 : 매년 상반기 중(3-5 월 권고)에 학부모와 보건교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실시 - 교육청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 학교장, 관리자 교육
성인		- 생활터 별(군부대, 산업장등) 구강보건교육 실시 - 지역 아카데미, 직원 월례조회 등의 장을 통해 구강보건교육 실시
노인		- 생활터 별(노인대학, 경로당 등) 구강보건교육 실시 - 체험교육(입체조, 틀니 관리 실습 등) 실시 - 교육 홍보물 배포 권장(대상자의 기억 유지 항상 고려)
장애인		- 장애 유형을 고려한 구강보건교육 실시 - 보호자·관리자 교육 강화

[표 7] 구강보건 홍보매체

홍보내용	매체	구분	제작		자료 활용
			발행기관	연도	
구강건강생활 실천	구강보건의 날 주제영상	영상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연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슬로건	포스터, 배너, 현수막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각 연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생활 속 구강 관리 수칙	포스터, 리플릿, 스티커,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치솔질해송	포스터 음원파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인포그래픽	시안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홍보 리플릿	리플릿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차량용 홍보 스티커	스티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Oral Health Trend] Hello, Baby! (홍보용 브로슈어)	책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바른 양치 실천 유도	바른양치실천 공모전作品集	책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바른양치실천 확대를 위한 홍보 안내문	안내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아이들 치아건강 어른들이 지켜요 (홍보용 브로슈어)	책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즐거운 양치시간을 위한 학교의 변화 (홍보용 브로슈어)	책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바른양치실천 스티커	스티커 시안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불소 활용	불소 활용 홍보 포스터	포스터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치아건강 지켜주는 불소 아직도 몰라? (홍보용 브로슈어)	책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홍보 자료 모음집	책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홍보자료

※ 일부 자료의 경우 이미지 저작권 등으로 온라인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며, 발행기관으로 별도 활용 문의 요망

# II 불소용액 양치

Chapter  
02

세부사업내용

## 1 목적

- 불소용액 양치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극대화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1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23조

## 3 사업대상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전체학생
- ※ 사업대상을 우선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를 방문하는 지역사회 주민,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기업체, 초·중·특수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

## 4 사업기간

-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지속 실시

## 5 사업추진방법

### 1 사업지도 및 안내

- 보건(지)소 및 학교구강보건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지도

- 정기적인 학교방문으로 효율적인 사업 실시
-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등에게 사업취지·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대상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교육 실시로 인식의 전환과 업무협조 증진

※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서 연 1~2회 방문지도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월 1회 이상 방문지도

- 불소용액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교사 등 학교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참고 1]을 배부하고 협조체계 유지
- 양치시설을 설치한 학교에 대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병행 실시
- 동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준비물
  - 불소용액 제조통(1개), 불소용액 분배통(학급수×2개) 또는 불소용액 분배기
  - 칫솔질 교육용 치아모형 및 칫솔 : 1개 혹은 1세트

**【 통합건강증진사업 재정 외 자체 불소용액양치사업 추진 】**

- 보건(지)소 내소자 및 가정(지역사회 주민), 학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기관(경로당·사회복지시설, 유치원(어린이집), 기업체 등) 등을 방문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 ※ 실시기록 대장 등을 통해 자체관리

[표 8] 불소용액양치사업 소요기자재

약품 및 기재	소 요 량	비 고
칫솔(어린이용)	아동 1인당 1개	학급에 보관
플라스틱 양치컵	"	"
세치제(불소함유)	"	"
불화나트륨	아동 1,000명당 연간 1,800g	포장규격(단위:병) : 100g
불소용액 분배기 (자동 분배기계)	학교당 1개	안전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불소가 모두 용해되는 자동교반 방식의 기기(권장)
칫솔질 교육용 치아모형 및 칫솔	학교당 1조	치과재료상에서 구입 가능
전자저울	학교당 1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음
※ 불소용액 분배기(자동 분배기계)가 없는 경우		
불소용액 제조통 (20리터 플라스틱용기)	학교당 1개	형태에 관계없이 시중에서 구입
불소용액 분배통 (1리터 플라스틱용기)	학급당 2개	플라스틱용기 판매점 또는 화공약품상에서 구입가능

## 2 사전 교육

- 사업 대상자 및 보건교사,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 및 적정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행

## 3 불화나트륨 제조와 분배

- 불화나트륨 용액은 시행 하루 전에 보건교사 또는 보건 담당교사가 제조하여 각 학급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함(단, 필요시 보건소 사업담당자가 제조 후 분배 가능하며,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의 경우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조)
- ※ '불소용액분배기'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기 배부된 사용방법안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정수기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표 9】 학급 규모별 불화나트륨 용액 제조 및 분배량

학급 수 (학급당 40 명 기준)	0.05% 불화나트륨 용액	0.2% 불화나트륨 용액	학급별 분배량
40 학급	10g NaF/음용수 20ℓ	40g NaF/음용수 20ℓ	학급별 0.5ℓ (1인 10ml)
20 학급	5g NaF/음용수 10ℓ	20g NaF/음용수 10ℓ	학급별 0.5ℓ (1인 10ml)

### 【 불화나트륨 용액 제조 방법 】

- 불화나트륨(NaF) 사용량(무게) 확인
  - (40학급 기준) 0.05% 용액 제조 시 10g, 0.2% 용액 제조 시 40g
  - (20학급 기준) 0.05% 용액 제조 시 5g, 0.2% 용액 제조 시 20g
- 불소용액 제조통(20ℓ 플라스틱용기)에 적정량(40학급 기준 20ℓ, 20학급 기준 10ℓ)의 음용수를 채워 눈금 확인
- 계량한 불화나트륨을 불소용액 제조통에 넣어 희석(시행 1일전)
- 불소용액 분배통(1ℓ 플라스틱용기)에 적정량씩(0.5ℓ) 담아 학급별로 분배

### ● 불화나트륨 용액 사용

- 0.05%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매일 1회 실시
- 0.2% 불화나트륨(NaF)용액의 경우 주 1회 실시

## 4 불소약품 관리 및 보관

※ 불소약품은 물에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독물」이므로 약품관리와 보관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약품관리

- 약품수령 및 학교약품배정은 보건(지)소 치과의사 책임으로 실시
  - 학교구강보건실도 담당치과의사 책임으로 실시, 1회 사용량으로 분배
- 학교장은 약품관리책임자를 임명·관리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관리하며 각 교실에 불소 용액을 공급
-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재고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일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불화나트륨’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9. 폐유독물질)’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 약품취급

- 약품취급은 반드시 약품관리책임자(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 : 치과의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하여야 하며 특히 학생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표 10] 불화나트륨(플루오르화 나트륨) 취급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제 13 조 관련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 2018-1 호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 명칭	취급기준
<b>플루오르화 나트륨</b> [Sodium fluoride; 7681-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분진·흡가스·미스트·증가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할 것 - 눈, 피부, 의복(보호복 등 제외)에 묻지 않도록 할 것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할 것 - 보관·저장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할 것



● 약품보관

- 약품상자를 제작하여 약품을 넣고 반드시 약품보관장 또는 캐비닛(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 학교구강보건실 내)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
- 유독물통 외부표면에 아래 요령에 의거 「유독물」 표시 부착
  - ‘불화나트륨’ 및 ‘불소용액’은 「약사법」 적용대상인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에 해당되어 ‘유독물질’로 분류

[그림 9] 유독물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 (표준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2 항 관련 [별표 2] 유독물의 표시방법)



참고 1

### 불소용액양치 실시 지도방법(학교 실무자용)

학기 중 공휴일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학급별로 칫솔질을 실시한 후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1. 모든 학급별로 불소반장을 선출한다.
2. 반장이 점심식사 직후에 학교구강보건실(보건실)에서 불소용액을 타온다(반드시 점심식사 직후가 아니어도 가능함).
3. 학생 개별로 칫솔질을 한다.
4. 반장이 학생 개인 양치컵에 불소용액 분배통 뚜껑(10 ml정도)으로 불소용액을 분배해 준다.
5. 불소용액으로 1분간 양치(입가심)를 한다.
6. 1분이 지나면 불소용액을 뱉는다.
7. 주의사항
  - 불소용액 : 0.05% 불화나트륨용액 매일 1회 실시 0.2% 불화나트륨용액 주 1회 실시 (매주 일정한 시간 지정)
  - 1회 양치 불소용액 : 10ml(불소용액 분배통 뚜껑) 정도로 한다.
  - 양치 후 30분간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을 지도한다.

# Ⅲ 어린이 불소도포

Chapter  
02

세부사업 내용

## 1 목적

- 치아우식증(충치)에 취약한 아동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함으로써 우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1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 3 사업대상

- 15세 이하 아동(우선대상자 고려)
  - ※ 생활터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 ※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함

**【 불소도포사업 우선대상자 】**

- 저소득층 아동
- 우식발생가능성이 높은 아동
- 우식이 다수 발생된 아동
- 아직 광화가 불안전한 영구치가 새로 맹출 한 아동
- 치열이 변화하는 시기인 3, 7, 10, 13세 아동

## 4 사업수행인력

-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치과 의사(공중보건치과 의사)의 지도하에 치과 위생사가 실시

## 5 사업추진방법

### 1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참고 2]을 배부하여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 단, 서비스 제공 시 [부록1]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필수로 받아야 함

### 2 사전 교육

-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행

### 3 불소도포 수행

- 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등 확인 후 처치 시행
- 불소도포 방법 :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 겔 도포, 불소이온도입  
※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 불소도포 후 주의사항 안내

### 4 기록 관리

- 기록지에 시술일자, 성명, 연령 등을 정확히 기록 관리[참고 3]

[표 11] 불소도포 방법별 수행 요령

구분		수행 요령
불소 바니쉬 도포	대상	• 만 3 세 이후
	효과	• 효과 : 약 40%의 우식예방효과
	주기	• 6 개월에 1 회(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판단 하에 도포주기 조정 가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소바니쉬 준비</li> <li>• 치아분리 : 방습면봉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함</li> <li>• 치면건조 : Air syringe 로 치면을 건조시킴</li> <li>• 바니쉬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러쉬로 불소바니쉬를 잘 섞어준 후 브러쉬를 이용하여 입술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아의 전체 면에 얇게 바름</li> <li>* 치아사이 인접면은 무왁스 치실(unwaxed floss silk)을 사용하여 도포</li> <li>- 시술 후 1 시간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 정상적인 식사는 도포 3-4 시간 후 하도록 지도</li> <li>- 도포 후 치아가 불소바니쉬의 색깔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랗게 된다는 점과 다음날 칫솔질에 의해 제거된다는 점 안내</li> </ul> </li> </ul>
불소 겔 도포	대상	• 만 3 세 이후
	효과	• 27~36%의 우식예방효과
	주기	• 6 개월에 1 회(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판단 하에 도포주기 조정 가능)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레이 준비 : 부드러운 촉감의 기성 제품인 스티로폼 트레이 사용</li> <li>* 트레이가 없는 경우, 칫솔로 도포 할 수 있음</li> <li>• 불소 겔 준비 : 트레이 내면에 1.23%의 APF(산성불화인산염) 겔 또는 2%의 NaF (불화나트륨) 겔을 트레이 깊이의 반을 넘지 않도록 권장</li> <li>* 각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 참조</li> <li>• 치아분리 : 방습면봉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함</li> <li>• 치면건조 : Air syringe 로 치면을 건조시킴</li> <li>• 전 처치 : 불소 겔이 닿을 수 없는 부위에 여분의 불소 겔을 미리 도포함</li> <li>* 구치부 교합면 열구, 교정용 브라켓 주위 치면 등은 막대면봉 이용하여 도포</li> <li>* 치아사이 인접면은 무왁스 치실(unwaxed floss silk)을 이용하여 도포</li> <li>• 불소 겔 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소 겔이 담긴 트레이가 최대한 치면에 많이 닿도록 하여 장착시킴</li> <li>- 환자가 트레이를 자근자근 씹어서 겔이 액화되어 치아에 잘 스며들도록 하며, 트레이를 4 분 정도(제조사에 따라 권장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 물고 있도록 지도함</li> <li>- 트레이의 모양에 따라 상·하악 분리하여 도포하거나 한꺼번에 도포하고, 구강 안에 고이는 타액은 타액흡입기를 이용하여 흡입함</li> <li>※ 타액흡입기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을 일반 의자에 앉히고 불소도포 하는 동안 불소를 삼키지 않도록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도록 지도함</li> </ul> </li> </ul>

구분	수행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 분(제조사에 따라 권장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적용)이 지난 후 구강내의 트레이와 방습면봉 등을 제거, 면구를 이용하여 여분의 불소 겔을 세밀히 닦아줌</li> <li>- 시술 후 30 분 ~ 1 시간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li> </ul> </li> </ul>
<b>불소 이온 도입</b>	<b>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 세 이후</li> </ul>
	<b>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36%의 우식예방효과</li> </ul>
	<b>주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 개월에 1 회(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판단 하에 도포주기 조정 가능)</li> </ul>
	<b>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소이온도입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소이온도입기, 이온트레이, 연결선과 도포봉, 2%의 NaF(불화나트륨) 용액 준비</li> <li>- 전류와 타이머 조절장치를 0 으로 맞춤</li> <li>* 불소이온도입기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온도입법 사용 시 세심한 주의 필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용 불가능</li> </ul> </li> <li>• 치아분리 : 방습면봉을 이용하여 치아를 분리함</li> <li>• 치면건조 : Air syringe 로 치면을 건조시킴</li> <li>• 전 처치 : 접근이 어려운 부위에 불소용액을 미리 도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면의 세밀한 부위, 교정용 브라켓 주위 치면은 막대면봉 이용하여 도포</li> <li>* 치아사이 인접면은 무왁스 치실(unwaxed floss silk)을 사용하여 도포</li> </ul> </li> <li>• 이온트레이 장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온트레이에 2% NaF(불화나트륨)용액을 적신 후, 구강 내 삽입</li> <li>- 치면에 모든 용액이 접촉되도록 하며, 이온트레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를 지그시 다물게 하여 고정시킴</li> </ul> </li> <li>• 이온도입기 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선을 이온트레이의 손잡이에 나와 있는 금속판에 접지시키고 전극봉을 환자의 손에 잡게 한 후, 작동스위치를 눌러 전원이 들어오게 함</li> <li>- 전류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전류를 높이면서 환자 상태 관찰(약간의 전류에도 자극을 느끼는 경우 전류를 낮춤)</li> <li>- 환자가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는 최고 전류(보통 100 ~ 200 <math>\mu</math>A)로 고정시키고, 시간조절장치는 약 4 분정도 맞춤(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명서 참조)</li> <li>- 전극봉 불이 꺼질 때까지 환자에게 잡고 있도록 하며, 환자와의 접촉을 금함</li> </ul> </li> <li>• 후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기에서 수초 간 경보음이 울리면서, 전극봉 불이 꺼지고, 시간조절장치와 전류 조절 장치의 계기판이 0 이 되면 도포 종료</li> <li>- 환자 구강 내 불소이온트레이와 접지된 연결선을 분리시키고 전극봉을 놓게 함</li> <li>- 이온트레이, 타액흡입기, 방습면봉 등 구강 내 제거</li> <li>- 상악 시술이 끝난 뒤 같은 방법으로 하악 시술</li> <li>- 시술 후 30 분~1 시간동안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li> </ul> </li> </ul>

참고 2

###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실시 안내

평생 치아건강은 어릴 적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아우식증(충치)과 같은 구강질환은 학령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만 12세 어린이의 절반 이상(56.4%)이 이미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였고, 1인 평균 치아우식증(충치) 경험치아는 1.84개로 선진외국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상황입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한 번 발생하면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보건소는 어린이 치아우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불소’는 치아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결합하여 치아 표면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 구강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아우식(충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스스로가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에 참여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여 어린이 성명	보호자 성명(서명)	날짜
_____	_____ (서명)	_____ . _____ . _____

○○○ 보건소



참고 3

### 어린이 불소도포 시술 기록지

○○ 시·군·구 보건소

접수일 :     년     월     일     Case No.

성 명 :     성별 (남·여)   연령 : 만     세 (생년월일 :     년     월     일)

**1회 도포**

도포 일자 :     년     월     일

시술자 :

불소도포 시술 내역

불소도포 종류	불소도포 시술부위
	상악(            ) )
	하악(            ) )

기타 의견

**2회 도포**

도포 일자 :     년     월     일

시술자 :

불소도포 시술 내역

불소도포 종류	불소도포 시술부위
	상악(            ) )
	하악(            ) )

기타 의견



# IV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Chapter  
02

세부사업내용

## 1 목적

- 치주질환 발생이 많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통해 치근면 우식을 예방하고 시린이를 방지하기 위함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5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15조

## 3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4 사업수행인력

-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치과의사(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

## 5 사업추진방법

### 1 사업 안내 및 신청 접수

-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안내문[참고 4]을 배부하여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 단, 서비스 제공 시 [부록1]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필수로 받아야 함

## 2 사전 교육

-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 및 불소 활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선 수행

## 3 사업 실시

- 대상자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시행
    - 사업 실시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 사용
  -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방법
    - 치주치치 방법 : 스케일링(치아 동요도가 없는 경우) 또는 전문가 치면세정술(치아 동요도가 있는 경우)
    - 불소도포 방법 :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 \* 치아 직접 도포 : 치아 수가 적은 경우(10개 이내)

## 4 기록관리

- 기록부에 시술일자, 성명, 나이 등을 정확히 기록 관리[참고 5]

참고 4

### 노인 불소도포 · 스케일링사업 실시 안내

현재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절반가량이 치아전체를 잃고서 틀니를 하고 있거나 해야 할 정도로 구강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치아우식(충치)과 악화된 잇몸병으로 인해 치아를 잃는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소는 어르신대상 불소도포·스케일링을 실시하여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를 어르신들 치아에 발라 치아우식(충치)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치아 혹은 틀니를 보다 깨끗이 닦아드리며 스스로 치아와 틀니를 깨끗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희망하신다면 이와 같은 도움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1~2회씩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어르신들의 치아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방안을 알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취지에 동감하여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동의합니다.

참여자 성명 : (서 명) 날짜 : . . .

기록자 성명 : (서 명) 날짜 : . . .



참고 5

### 노인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

○○ 시·군·구 보건소										
접수일 :      년      월      일					Case No.					
성 명 :			성별(남·여)			연령 : 만		세		
검진의사 :										
상담원 (치과의사/치과위생사) :										
1. 전신건강상태(병력 등 일반적 사항)										
혈 압		거 동		당노병		기타질환				
/		가능	불가능	( 유 )	무	( 유 )	무			
2. 구강상태기록(해당부분에 기록하세요)										
우식치아 (D)	충전치아 (F)	건전 치아수 <sup>1)</sup>	자작기능 여부		치석제거		의치(틀니) 장착		의치(틀니) 필요	
개	개	개	가능	불가능	필요	불필요	예	아니오	예	아니오
3. 면접상담 및 교육내용(해당부분에 “○” 하세요)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예			아니오			
아픈 치아가 있음				예			아니오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고 아픔				예			아니오			
찬물을 마시거나 이닦을 때 이가 시림				예			아니오			
하루 중 칫솔질 횟수				아침식사후	점심식사후	저녁식사후	잠자기전			

1) 건전 치아 수 : 임플란트는 포함시키지 말 것

# V.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설치·운영

Chapter  
02

세부사업내용

## 1 목적

-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구강보건센터로 확대·전환하여 센터의 인적·물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지역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 활성화를 통해 구강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7조의2,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3 설치대상 및 예산

- 대상 : 시·군·구 보건소
- 설치비 지원
  - 구강보건센터 3개소(21년) 설치·지원 예정
  - 개소 당 18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 2014년부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국민건강증진기금)」에 예산이 편성됨

## 4 설치기준

### 1 시설·장비

- [표 12]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시설 및 장비 기준 참조

[표 12] 구강보건센터 시설 및 장비 기준(시행규칙 제 16 조의 2 제 3 항 관련)

시 설	면 적	장 비	비 고
1. 구강진료실	40 m <sup>2</sup> 이상	가. 치과용 유니트 체어 2 대 나. 진료용의자 다. 공기압축기, 석션기 라. 멸균기 마. 구내 X-ray 촬영기 바. 치석제거기 사. 광중합기 아. 불소이온도입기 자. 아말감 혼합기 차. 진료물품 보관 냉장고 카. 냉난방기	유니트 체어 2 대(장애인 유니트 체어 포함) 이상을 이용하여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의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장비
2. 구강보건교육실	33 m <sup>2</sup> 이상	가. 교육용 칫솔모형 나. 교육용 치아모형 다. 칫솔질용 세면대 라. 간이 위상차 현미경 마. 컴퓨터 바. 모니터 사. 구강카메라 아. 교육 상담용 탁자 자. 교육물품 보관장 차. 냉난방기	
3. 구강보건사업실	27 m <sup>2</sup> 이상	가. 컴퓨터, 프린터 나. 전화기, 팩스 다. 사무용 책상, 의자 라. 회의용 탁자, 의자 마. 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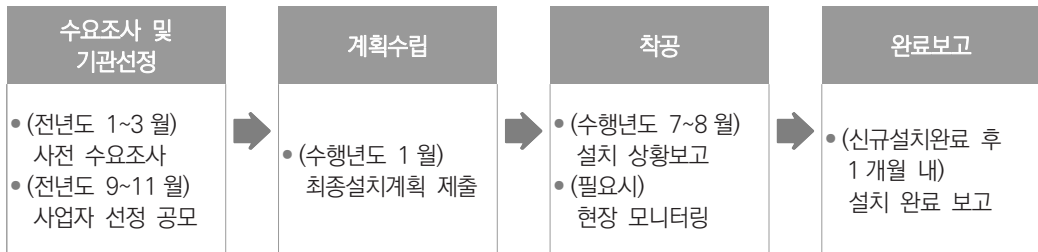
## 2 인력·조직

- 최소 인력은 치과의사 2인, 치과위생사 5인
- 진료팀은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1인으로 구성
  - 진료팀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장애인 대상 구강진료에 필요한 교육(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직무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함

- 치과의사 인력 2인 중 최소 1인은 계약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 등), 기간제근로자로 상근하여야 함
  - 나머지 1인은 주2일(주 16시간, 연간 100일)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지역치과의사회나 치과병원(대학) 등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치과의사 또는 기간제 치과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
- MOU 체결을 통해 지역치과의사회, 치과대학, 치위생(학)과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 MOU 체결 사항을 명시하고 MOU 체결 후 관련 문서를 보건복지부에 송부하여야 함

## 5 사업추진방법

### 1 구강보건센터 설치절차



- 구강보건센터 신규 설치 완료 후 1개월 내에 [표 12]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시설 및 장비 기준’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센터 설치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함
- [표 12]에 명시된 품목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최소 구비 품목으로써 품목 대장을 비치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대장관리를 하여야 함
- 설치계획서 및 완료(상황)보고서 서식은 선정통보 시 안내예정

※ 수요조사 시 실제 추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후 신청 요망(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설치 여부를 반복하는 경우, 향후 재신청 시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 발생 가능)

## 2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 구강보건센터의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 확보 필요  
※ 구강보건센터의 장애인구강보건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는 비용

## 3 구강보건센터 조직 운영

- 구강보건센터 운영 시 설치 기준 인력 유지 필수
- 모든 보건(지)소 구강보건인력은 구강보건센터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강진료실 운영이 필요한 보건지소의 경우, 구강보건센터 인력으로 주 2~3일 출장 진료 시행
-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진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 보건조직 및 지역복지 담당부서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구강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연, 영양, 만성질환 관리 등 관련 부서와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 6 주요 사업

- 구강보건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를 중심으로 하며, 연차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구강보건센터는 구강보건실의 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함
- 주요 사업 내용은 [표 13]과 같으며 각 사업은 구강보건 분야 별도 사업 또는 타 건강증진 사업과의 통합·연계사업으로 수행 가능함



[표 13]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주요 사업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p>① 구강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 자세한 사항은 '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전체 주민</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터별 건강관리자 대상 구강보건교육</li> <li>▶ 기 개발·보급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상자별 교육</li> </ul> </li> </ul> </li> <li>• 구강건강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자세한 사항은 '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전체 주민</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자료 개발 및 인식 확산</li> <li>▶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이 속한 구강보건 주간을 기점으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li> <li>* 무료 검진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체험 부스 운영, 어린이 구강보건 연극제, 구강건강 표어·포스터 선발·포상·전시, 지역 구강보건유공자(구강보건봉사자, 지역치과의사회 등) 포상 등</li> <li>▶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시 구강관리용품 제공 가능</li> <li>▶ 국가 구강검진 안내 및 홍보</li> </ul> </li> </ul> </li> </ul>
<p>②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및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대상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사업 발굴 추진</li> <li>- 정기 구강검진, 개별 구강상담 및 교육 제공</li> <li>-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대상 : 치면세정술, 스케일링 등</li> <li>▶ 유아 대상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술 등</li> </ul> </li> </ul> </li> <li>•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li> <li>- 취약계층(농·어촌지역 초등학생 등) 지원 자체사업(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추진</li> <li>- 정기 구강검진,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li> <li>-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술 등 예방서비스 제공</li> </ul> </li> <li>• 노인 및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대상사업과 연계하여 자체 사업 발굴 추진</li> <li>- 노인 의치(틀니) 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등</li> <li>- 정기 구강검진,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li> <li>- 불소도포, 치면세정술, 스케일링 등 예방서비스 제공 등</li> </ul> </li> </ul>



세부사업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p>③ 취약계층 아동 치아홈메우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 아동의 구치(어금니) 교합면 홈을 메워줌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강 형평성 확보에 기여</li> </ul> </li> <li>•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장 및 학교장이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약계층 아동(저소득 혹은 보호가 취약한 아동)</li> </ul> </li> <li>• 대상치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 1 대구치 우선)</li> <li>- 이미 전색한 치아 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li> </ul> </li> </ul>
<p>④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기획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수립·시행·모니터링·평가</li> <li>- 연간 구강보건사업 성과관리, 자체평가, 환류 등</li> </ul> </li> <li>• 생활터 구강건강증진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른 칫솔질 실천 환경(양치시설 개선·설치) 구축</li> <li>- 적정 불소 이용(불소용액양치, 수돗물불소농도조정 등) 환경 구축</li> </ul> </li> </ul>
<p>⑤ 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보건 전문가(집단), 구강보건사업 수혜자(집단) 참여 강화</li> <li>• 구강보건 자원봉사 모임 조직·운영 : 지역의 자원봉사자나 단체와 연계 운영,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과정을 통해 자원봉사자 발굴</li> <li>• 지역 내 민간 치과 병(의)원, 기업(사업장), 학교 등과의 협력·연계 사업 기획, 추진</li> </ul>
<p>⑥ 취약계층 구강 진료사업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대상 구강질환 예방·관리 및 치료 서비스 제공</li> <li>•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대상 구강질환 예방 및 초기치료 사업</li> </ul>

# VI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Chapter  
02

세부사업 내용

## 1 목적

- 아동의 집단생활시설인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적정 양치 설비를 갖춘 물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강건강관리 실천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바른 구강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관리하고자 함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2조, 제13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9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

## 3 사업대상

- 초등 및 특수학교(취약지역 우선) 학생, 지역아동센터 학생

## 4 사업수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교육(지원)청 및 관할 초등·특수학교장

## 5 사업추진방법

### 1 양치시설 설치

- 학교 양치시설 설치 조건[표 14]을 충족하도록 양치시설을 설치
  - 보건소가 제안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학교가 주도적으로 양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표 14] 학교 양치시설 설치 조건

시설명	기 준		비고
총별형 (복도형)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이 흘러도 복도에 유입되지 않는 곳</li> <li>• 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 ※ 불소용액분배기 설치 시 전기 시설 설치 필요</li> <li>• 복도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이 쉬운 곳</li> <li>• 겨울철 동파의 위험이 없는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칫솔질 관찰판의 경우 각 학급별 비치하여 활용 (월별 교체)</li> <li>• 손 씻기와 공동 사용 가능</li> </ul>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시설(수도꼭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꼭지 사용의 용이성 고려</li> </ul> </li> <li>• 칫솔질용 세면대 및 벽면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에 따른 성장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높이로 차등 설치</li> <li>- 세면대는 물이 튀지 않는 형태를 고려</li> <li>- 이용 아동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리 물품 사용 자제 요망</li> <li>- 휠체어 아동용 세면대 반드시 설치할 것</li> </ul> </li> <li>•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및 복도와 경계공사</li> </ul>	
교실형 (18~20 평 이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 교실 등(평균교실 크기, 약 59~66㎡ 이상) ※ 학교 인원수에 따라 적정할 경우, 면적 조정 가능 단, 사업계획서상 학생인원, 면적, 양치시설 설치 위치, 예산 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li> <li>• 전교생의 접근이 가능한 곳</li> <li>• 전기·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li> <li>• 급식 시설과 같은 층이거나 동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설치 권장</li> <li>• 별도의 단독 건물보다는 학사 등 건물 내에 설치(동파방지 등)</li> </ul>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시설(수도꼭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꼭지 사용의 용이성 고려</li> </ul> </li> <li>• 칫솔질용 세면대 및 벽면거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에 따른 성장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높이로 차등 설치</li> <li>- 세면대는 물이 튀지 않는 형태를 고려</li> <li>- 이용 아동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리 물품 사용 자제 요망</li> <li>- 휠체어 아동용 세면대 반드시 설치할 것</li> </ul> </li> <li>• 미끄럼방지 바닥공사</li> </ul>	
공통	교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보건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설치가 가능하나, 양치를 위한 시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교육의 기능은 각 학급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각 보건소 및 학교의 시설·인력 사정에 맞춰 계획</li> </ul>	

- 학교 정문 혹은 양치시설 건물 외벽에 ‘양치시설 설치학교’ 표지판 설치
  - ※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설치 여부, 내용, 글자, 재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협의 하에 결정
- 양치시설 설치 시, 아래의 [최소 구비 품목]을 비치하도록 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대장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명시된 품목을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용도 또는 효능의 유사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
  - 보건소는 학교 양치시설 관련 물품을 구청 또는 교육청에 즉시 등록하여 화재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최소 구비 품목 】**

- 양치시설 설치 학교 현판
- 세치제, 칫솔질 방법 홍보물
- 교육용 악치 모형, 대형칫솔 및 모래시계(3분용) 등
- 칫솔질 관찰판(각 교실에 비치하며 월마다 교체)
- 물기제거용 발판
- 불소용액분배기(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지역을 제외한 곳에 설치)
  - ※ 설치물품은 각 보건소 및 학교의 시설·인력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계획

- 국비 지원으로 설치된 양치시설의 경우, 설치 완료 후 1개월 내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 학교 양치시설 설치완료를 보고[참고 6]하여야 함

**2 양치시설 운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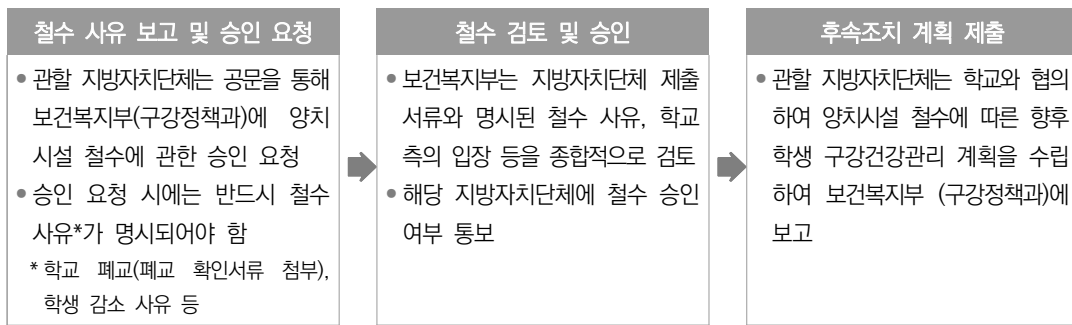
- 양치시설 설치 대상학교 선정 시, 양치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 협약 내용에는 최소 3년간 양치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할 것

**3 양치시설 운영**

- 양치시설은 상시 개방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토록 하여야 함
- 각 학급별 칫솔질 관찰판을 부착하여 식후 칫솔질 실천을 증대

- 양치시설은 다른 건강증진 활동(손 씻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선도하고 거울을 활용한 관찰로 올바른 칫솔질 학습이 가능
- 양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소에 봉사인력으로 등록된 자, 학부모 봉사자, 지역사회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 및 중·고등학생 봉사동아리 등과 연계 권장

#### 4 양치시설 철수 관련 사항



※ 상기 절차는 국비 지원시설에 한하며, 그 외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

참고 6

### 학교양치시설 설치완료 보고

1. 설치현황
  - 설치기간(완공일) :
  - 시설형태 :
  - 설치위치 :
  - 설치면적
  - 수도꼭지 개수 :
  - 소요예산
  - 추진경과
  
2. 설치학교 현황
  - 학교명
  - 주소
  - 학급·학생 수

(단위:명)

구분	학교 현황							비 고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급수								
학생수								

3. 설치조건 준수여부

구분	내 용		설치(적합)여부 (○, ×)
설치	교실형	• 빈 교실 등(평균교실 크기 68㎡)	
		• 전교생의 접근이 가능한 곳	
		• 전기·상수도·하수도 시설 설치	
		• 급식 시설과 같은 동선으로 이어지는 위치	



세부사업내용

구분	내용		설치(적합)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 등 건물 내에 위치(동파방지 등)</li> </ul>	
	복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이 흘러도 복도에 유입되지 않는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하수도 시설 설치 가능한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 중앙에 위치하여 접근이 쉬운 곳</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철 동파의 위험이 없는 곳</li> </ul>	
시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시설(수도꼭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칫솔질용 세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동용(휠체어 이용) 세면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면거울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끄럼방지 바닥공사 설치</li> </ul>	
	복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와 경계공사(복도형의 경우)</li> </ul>	
용품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치시설 설치 학교 현판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바른 칫솔질 및 세치제 사용법 등 구강보건 교육 자료(판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용 악치모형, 대형 칫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래시계(3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칫솔질 관찰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제거용 발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소용액분배기</li> </ul>	
교육시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보건 교육시설 및 장비 설치*</li> </ul>	

\* 교육시설 및 장비를 설치한 경우 예산 집행내역에 세부내역 기재요망



4. 예산 집행내역

•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합 계	국비(50%)	지방비(50%)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세부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품 명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소 계					
시설비	• 설계비				
	• 공사건축				
	• 인테리어공사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기타				
장비 및 용품구입비	• 불소용액분배기				
	• 칫솔 소독기				
	• 구강교육관련 판넬				
	• 양치시설 설치학교 현판 등				

5. 설치 관련사진

• 필수 첨부사진

- 양치시설(교실)의 전체 전경 사진
- 출입구 사진
- 개수대(수도꼭지) 사진
- 장애인 시설 사진
- 교육자료 게시 사진
- 바닥사진



## VII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1 목적

- 아동의 집단생활시설인 학교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칫솔질,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해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2조, 제13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9조

### 3 사업대상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 4 사업수행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교육(지원)청 및 관할 초·특수학교장

### 5 사업추진방법

#### 1 구강보건실 설치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기준[표 15]을 충족하도록 설치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기준에 명시된 품목은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최소 구비 품목으로서 보건소는 해당 학교에서 품목대장을 비치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대장관리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보건소는 학교 구강보건실 관련 물품을 구청 또는 교육청에 즉시 등록하여 화재 등 만일의 사태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학교 정문에 ‘구강보건실 설치학교’ 표지판 설치

[표 15]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기준

구분	기준	비고																											
설치공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 교실 등(평균 교실 크기의 1/2 이상, 약 33~66㎡ 이상)</li> <li>• 보건실과는 별도의 공간마련(치과기계의 소음 등의 이유)</li> <li>• 전기·상수도·하수도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li> <li>• 별도의 단독 건물보다는 학사 등 건물 내에 설치(학생이동편의 및 동파방지 등)</li> </ul>																											
	품목	<table border="0"> <tr> <td>1. 내부 칸막이공사</td> <td>교실, 진료실·대기실 칸막이 공사</td> </tr> <tr> <td>2. 상·하수도 연결공사</td> <td>구강보건실 내·외부 상·하수도 공사</td> </tr> <tr> <td>3. 의자(대기용)</td> <td>3 인용 1 개, 1 인용 3 개</td> </tr> <tr> <td>4. 가구공사</td> <td></td> </tr> <tr> <td>가. 접수카운터</td> <td></td> </tr> <tr> <td>나. 칫솔질 교습용 양치코너장</td> <td></td> </tr> <tr> <td>다. 차트정리장</td> <td>거울포함(세면대 2 개 이상)</td> </tr> <tr> <td>라. 싱크기구장</td> <td></td> </tr> <tr> <td>마. 화일장</td> <td>시건장치 부착</td> </tr> <tr> <td>바. 상담테이블</td> <td>시건장치 부착</td> </tr> <tr> <td>사. 모빌장</td> <td></td> </tr> <tr> <td>아. 오닉스싱크세트 및 수도가랑</td> <td></td> </tr> <tr> <td>자. 스텐인서트싱크 및 수도가랑</td> <td></td> </tr> <tr> <td>5. 기 타</td> <td>기타 공사 등이 필요한 부분</td> </tr> </table> <p>※ 시설설치 공사는 각 학교구강보건실 여건에 맞도록 시설물과 수를 조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조는 밝은 색 위주로 선택</li> <li>- 가구 등의 크기 및 규격은 이용학생이나 교실평수에 따라 조절가능</li> <li>- 기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구강보건실 적극 참고</li> </ul>	1. 내부 칸막이공사	교실, 진료실·대기실 칸막이 공사	2. 상·하수도 연결공사	구강보건실 내·외부 상·하수도 공사	3. 의자(대기용)	3 인용 1 개, 1 인용 3 개	4. 가구공사		가. 접수카운터		나. 칫솔질 교습용 양치코너장		다. 차트정리장	거울포함(세면대 2 개 이상)	라. 싱크기구장		마. 화일장	시건장치 부착	바. 상담테이블	시건장치 부착	사. 모빌장		아. 오닉스싱크세트 및 수도가랑		자. 스텐인서트싱크 및 수도가랑		5. 기 타
1. 내부 칸막이공사	교실, 진료실·대기실 칸막이 공사																												
2. 상·하수도 연결공사	구강보건실 내·외부 상·하수도 공사																												
3. 의자(대기용)	3 인용 1 개, 1 인용 3 개																												
4. 가구공사																													
가. 접수카운터																													
나. 칫솔질 교습용 양치코너장																													
다. 차트정리장	거울포함(세면대 2 개 이상)																												
라. 싱크기구장																													
마. 화일장	시건장치 부착																												
바. 상담테이블	시건장치 부착																												
사. 모빌장																													
아. 오닉스싱크세트 및 수도가랑																													
자. 스텐인서트싱크 및 수도가랑																													
5. 기 타	기타 공사 등이 필요한 부분																												

구분		기준	비고
기계류	필수장비	1. 치과용 유닛 제어 2. 고압멸균소독기 3. 고속엔진 및 핸드피스 4. 저속엔진 및 핸드피스 5. 초음파 치석제거기 6. 광중합기	내장형 스케일러, 진료보조용 체어 포함 사용이 간편한 것 1.5HP, 치질식제용, 공기압축기 포함 우식제거용 및 치면세마용 앵글 포함 치면세마용 치아홈메우기용 등
	선택장비	7. 불소이온도포기 8. 치아건조기 9. 컴퓨터 10. VIDEO & TV 11. 슬라이드/OHP 환등기 12. 물탱크	사용이 간편하고 견고한 것 하트만 등 차트 작성, 통계집계 및 처리용 구강보건교육용 구강보건교육용 20ℓ
기구류	품목	1. 치경 2. 핀셋 3. 탐침 4. 발치검자 5. 엘리베이터 6. 루트피커 7. 스켈러 8. 엑스커베이트 9. 치아모형 (구강보건교육용 모형 4개 이상)	헤드 120개, 손잡이 50개 60개 60개 유치용 상·하 각 1개 소형 2개 전치부, 구치부 각 1개 영구치 맹출 과정 등 내부구조를 볼 수 있는 모형 치아우식증이 있는 모형, 영구치 모형 (대형 칫솔 포함),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를 볼 수 있는 모형 등 치과용 가위
		10. 가위 11. 덴탈실린지 아스피레이션 12. 레진충전기구 13. 기구바트 14. 솜통 15. 니들홀더 16. 헤모스타트 17. 메스홀더 18. 러버댐장착세트 19. 다이칼 캐리어 20. 허·볼 리트랙터 21. 스테인레스 스틸컵 22. 금속석션팁	플라스틱제품 2-3개 덮개 있는 것 대·중·소 각 1개 덮개 없는 것 대·중·소 각 1개 기구접시(깊이 낮은 것) 3개 2개 좌우 각 1개 20개 20개

구분	기준	비고
	23. 보안경 24. 스타퍼 25. 불소젤 트레이 26. 기타 ※ 각 기구 종류 및 개수는 각 학교구강보건실 여건에 따라 비치할 권장 사항임.	플라스틱 50 개 추가 또는 보완해야 할 기구
재료류	품목 1. 리도케인 2. FC 3. 코팔라이트 4. 징크옥사이드 유지물 5. 요오드징크 6. 다이칼 7. 누거즈 8. 불소젤 9. 니들 10. 메스브레이드 11. 글래스아이노머 세멘 12. 치아흡매우기 재료 13. 스타핑제제 14. 표면마취제 15. bur 16. 슈처니들&실크 17. 러버댐 18. 코튼롤 19. 거즈 20. 소공포 21. 소독포 22. 코튼 23. 교합지 24. 에이프런 25. 러버컵 26. 퍼미스 27. 에칠알콜 28. 식염수 29. 디스클로싱 용액 30. 웬지 31. 폴리글러브 32. 기 타 ※ 각 종류 및 개수는 각 학교구강보건실 여건에 따라 비치할 권장 사항임.	1:100,000 비율(5 통) 가루·액 혼합되어 있는 것 10 통 상약용·하약용 각각 300 개 100 개 수복용 또는 종합용 4 통(광중합조사용) 열가열이 필요 없는 제품 FG#330(12 개 1 셸) 24 개 2 통 3 장 3 장 1000 장 36 개 파우더 2 개 3 개 5 통 5 통 5 통 향생·소염·소화제, 매트리스밴드·리테이너 등 추가 또는 보완해야 할 재료



세부사업내용

## 2 구강보건실 운영비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은 장애인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자재비, 인건비 등) 확보 필요

## 3 구강보건실 운영

### ● 구강보건실 역할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 운영함으로써 해당학교에서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 구강보건실에 설치된 유니트 제어와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전문가 치면세정술 등의 구강보건사업 수행
  - 구강보건실에서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바른양치(칫솔질)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바른 칫솔질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활성화 유도

### ● 인력과 조직

-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 1회 이상 출장업무
  - 특수학교와 같이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요구될 경우 또는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경우 민간 치과의사의 참여 가능
- 보건소의 학교 구강보건사업 혹은 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학교 보건교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전폭적 지지 유도

### ● 구강보건실 수행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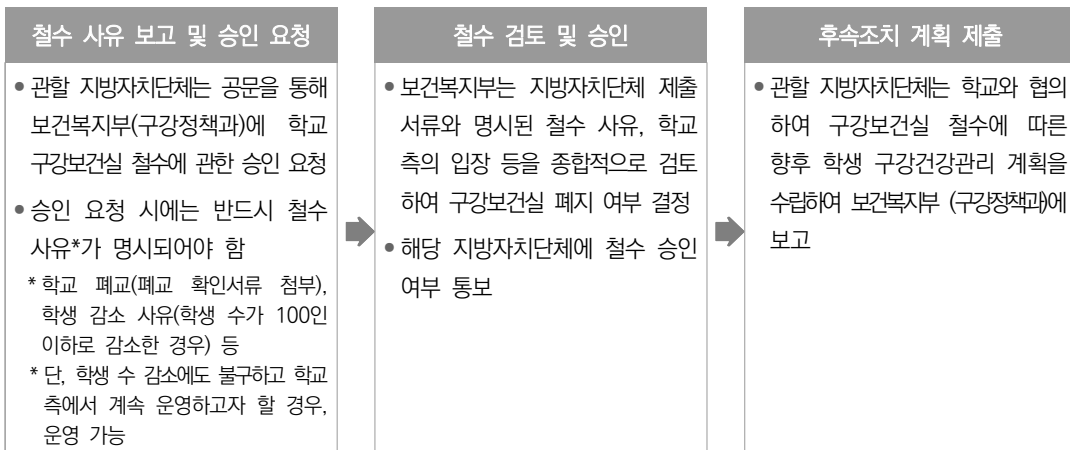
- 구강질병관리업무(계속구강건강관리)
  - 구강보건실 설치 후 관리학년을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전체 학생들 모두에게 매년 정기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술, 스케일링 등의 예방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
  - 정기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초기 우식증 치료, 초기 잇몸병 치료, 유치 발거 등의 초기치료서비스를 제공

- 학생들에게 구강검진 결과에 따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보호자(법정 대리인)에게 구강진료 동의서[참고 7]를 사전에 제출받아야 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참고 8]하여야 함
  - ※ 단, 서비스 제공 시 ‘부록1’의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필수로 받아야 함
- 구강보건실에서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바른 칫솔질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 식후 칫솔질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활성화 유도
  - ※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사업보고회 및 구강보건교육홍보 실시가 유용
- 학생별로 구강건강관리기록부를 만들어 6년 동안 사용하도록 함

#### 4 구강보건실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지원

- 대상 : 특수학교, 초등학교
- 교체수리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25%, 교육재정 25% (학교 당 최대 28,000천원까지)
  - \* 2018년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선정 지자체는 지방비와 교육청(학교)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예산 확보
  -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지원('21년 예산 28,000천원)
- 교체대상 :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 도과 또는 노후, 파손된 진료장비

#### 5 구강보건실 철수 관련 사항



※ 상기 절차는 국비 지원시설에 한하며, 그 외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

참고 7

### 구강진료 동의서(표준안)

\_\_\_\_\_의 구강검진 결과 아래와 같은 치과진료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_\_\_\_\_초등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구강보건실에서는 학부모님의 동의하에  
 아동의 구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처치 및 진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예방 처치 및 진료 내용〉

① 구강보건교육(칫솔질 교육 등) _____회	
② 예방처치	
<input type="checkbox"/> 치아홈메우기 _____개	<input type="checkbox"/> 불소도포 _____회
<input type="checkbox"/> 불소용액양치 _____회	<input type="checkbox"/> 치면세정술 _____회
③ 진료	
<input type="checkbox"/> 치아우식(충치)치료 _____개	<input type="checkbox"/> 유치발거 _____개
<input type="checkbox"/> 잇몸치료(스케일링) _____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담당자  
 치과의사 \_\_\_\_\_ 치과위생사 \_\_\_\_\_

.....  
 학년 반 번

(회신용)

본인은 아동 \_\_\_\_\_이(가) ○ ○ 초등학교 재학 중에 학교구강보건실에서 구강진료를 받기를

원함 ( )	원하지 않음 ( )
--------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보호자 성명 \_\_\_\_\_(인)



참고 8

### 구강진료결과보고서(표준안)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_\_\_\_\_ 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실에서는, 귀댁의 자녀 \_\_\_\_\_ 에게 다음과 같은 치과진료를 하였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예방 처치 및 진료 내용〉

① 구강보건교육(칫솔질 교육 등) _____ 회	
② 예방처치	
<input type="checkbox"/> 치아홈메우기 _____ 개	<input type="checkbox"/> 불소도포 _____ 회
<input type="checkbox"/> 불소용액양치 _____ 회	<input type="checkbox"/> 치면세정술 _____ 회
③ 진료	
<input type="checkbox"/> 치아우식(충치)치료 _____ 개	<input type="checkbox"/> 발치 _____ 개
<input type="checkbox"/> 잇몸치료(스케일링) _____ 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하여 학기당 1회 이상 정기적인 구강검진 요망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 초등학교 학교구강보건실 담당자  
 치과의사 \_\_\_\_\_ 치과위생사 \_\_\_\_\_



세부사업내용

참고 9

### (초등)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1. 검진대상

구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2. 검진결과

구분	유치 우식 경험자율(유병자율) <sup>1)</sup>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유병자율) <sup>2)</sup>			영구치 흡메우기 수혜자율 <sup>3)</sup>	
	1~4학년 평균	3학년	1~6학년 평균	3학년	6학년	1~6학년 평균	3학년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작성요령>

- 1) 유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초등학교 1~4학년에서만 산출하고, 1~4학년 전체의 평균값과 3학년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입. 유치 경험자율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 2) 영구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초등학교 1~6학년 전체에서 산출하고, 1~6학년 전체의 평균값과 3학년과 6학년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입. 영구치 경험자율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 3) 영구치 흡메우기 수혜자율은 초등학교 1~6학년 전체에서 산출하고, 1~6학년 전체의 평균값과 3학년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재

참고 10

### (특수)학교구강보건실 구강검진결과보고

1. 검진대상

구분	계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2. 검진결과

구분	유치 우식 경험자율 (유병자율) <sup>1)</sup>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 (유병자율) <sup>2)</sup>					초등부 영구치 홈메우기 수혜자율 <sup>3)</sup>	고등부 치석제거 필요자율 <sup>4)</sup>
	유치부	초등부	평균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누 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보건소명	학교명								

<작성요령>

- 1) 유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유치부와 초등부 1~4학년에서만 산출하고, 유치부와 초등부에서의 산출 값을 각각 기입. 유치 경험자율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 2) 영구치 우식경험자율과 유병자율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에서 산출하고, 각각의 산출값과 전체 평균값을 기재. 영구치 경험자율을 기입하고, 괄호 안에 유병자율을 기재
- 3) 영구치 홈메우기 수혜자율은 초등부에서만 산출하여 기재
- 4) 치석제거 필요자율은 고등부에서만 산출하여 기재

## VIII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 1 목적

- 정수장에 불소첨가기를 설치,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0.8 ppm : 0.8mg/l)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국민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 먹는물 불소기준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92호)」 )

- 제2조(수질기준) [별표1] 관련

####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나. 불소는 1.5mg/l (샘물·먹는 샘물 및 염지하수·먹는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10조, 제11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 3 사업대상

- 지역 주민 전체

### 4 사업수행주체

- 시도 또는 시·군·구
- 한국수자원공사

## 5 사업추진방법

### 1 사업 운영비

- 기 시행지역 : 불소약품 구입비, 불소첨가기 수리비 확보 필요
  - \* 특히 불소첨가기 설치가 10년 경과한 지역은 교체 및 수리비 예산 우선 편성
- 신규 시행지역 : 불소첨가기 구입 예산 편성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불소첨가기 구입 및 수리비 편성 시에는 보건복지부(구강정책과)와 협의 필요

### 2 사업 시행 또는 중단

-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 또는 중단 할 수 있음(구강보건법 제10조)

### 3 시설 관리

- 불소첨가기 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적정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함
- 정수장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자 이외 출입을 통제하고 경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담당자는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함
- 보건소장은 불화물첨가시설의 점검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불화물첨가시설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를 [참고 11]의 불화물첨가시설점검 기록부에 기록(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관련)
  - 점검결과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실시지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불화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등 안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참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 정수장(불소 취급 정수장)이 환경부가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대상'으로 확대 포함됨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 지역의 철저한 사업 안전관리가 요구됨
  - ※ '부적합' 판정 시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잠정중단을 보고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014.12.31. 이전)	화학물질관리법 (2015.1.1. 이후, )
<p><b>유해화학물질 관리법</b> 제 22 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도 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b>시행령</b> 제 16 조(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법 제 22 조 제 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을 연간 5 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200 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p>	<p><b>화학물질관리법</b> 제 24 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b>취급 시설별(법 제 29 조 및 시행규칙 31 조 참조)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규칙 제 23 조 참조)</b> 마다 제 2 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 4 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b>제 29 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b> 제 28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8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p> <p><b>제 23 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② 법 제 24 조 제 3 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b> 이란 1 년(법 제 28 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 년을 말한다) <b>제 31 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b> 법 제 29 조 제 4 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수도법」 제 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 톤 이하의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자. 다만, … (생략)</p>
<b>&lt;수불사업 시행 정수장 검사대상 포함 여부&gt;</b>	
x	○
	<p>① 연간 120 톤 초과 플루오르규산(불화규산) 사용 정수장 - 정기검사 1 년 주기 시행</p> <p>② 연간 120 톤 이하 플루오르규산(불화규산) 사용 정수장 - 정기검사 2 년 주기 시행</p>

## 4 장비 및 약품 관리

- 적합한 불소화합물의 선택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사용하는 불소화합물은 불화나트륨, 불화규소나트륨, 불화규산 중 정수장의 시설여건과 인력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
  - 품질이 우수한 불소화합물을 선택할 것
  - 경제성이 있는 불소화합물을 선택할 것
    - ※ 효과가 동일하면 저렴한 제품의 선택이 필요하나, 정수장 규모나 시설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함
  - 안전성이 있는 불소화합물을 선택할 것
- 불소화합물의 안전관리 강화
  - 불소화합물을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 분말 불소화합물과 액상 불소화합물 중에서 정수장 여건에 맞는 불소화합물을 선택하고, 해당 불소화합물 첨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 사업에 필요한 필수장비는 '불화물첨가기의 표준설비 및 설치모형'(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길라잡이 참고)에 의거하여 설치하고 점검함

### 【약품별 안전관리(보호복장)】

- 불화나트륨/불화규소나트륨
  - 고성능분진방독면(화학마스크) : 테두리는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어서 얼굴까지 밀착되며, 카트리지는 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
  - 보호안경
  - 팔목까지 오는 네오프렌 장갑(최소길이 12인치)
  - 산성에 잘 견디는 네오프렌 앞가리개
  - 목이 긴 장화
  - ※ 보호복장은 반드시 착용하며, 화합물 보관 장소의 출입구 근처에 비치
  - ※ 정수장내 다른 장소에서는 불화물 분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복장 착용을 금지할 것
  - ※ 불화물 개봉 시에는 가급적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봉한 포대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처리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
- ▶ 불화규산
  - 팔목까지 오는 네오프렌 장갑(최소길이 12인치)
  - 얼굴가리개(8인치, 산취급용 보안경)
  - 강력한 산 취급용 네오프렌 앞가리개, 장화
  - 샤워시설 또는 세면시설 등
  - 산을 취급할 때 옷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다른 용기로 옮길 경우에는 이송용 펌프를 사용할 것
  -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세척할 것
  - 저장탱크 청소 후 등 불화규산 취급을 취급할 때 탱크의 밸브가 완전히 잠겼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

## 5 불소농도측정요령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유지적정 불소농도는 0.8 ppm
  - 단, 허용범위는 0.6~1.0 ppm범위 이내이어야 함(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 정수장에서는 자동농도측정과 별도로 배수지(최종 생산된 물의 저장지점)에서 1일 1회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측정 결과는 [참고 12]의 불소농도측정일지에 기록(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3항 관련)
-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
  - 불소농도 측정 결과는 [참고 13]에 기록(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관련)하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상수도사업소장(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의 운영자)에게 통보
  - 불소농도 교차확인을 위해 월 1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법정수질자료 내 불소농도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불소농도를 [참고 14]에 기록하여 함께 통보

### 【 수돗물 불소농도 모니터링 】

- 사업담당자는 매월 수돗물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통보
  - 통보 시기: 측정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참고〉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7조, 제9조)에 근거한 불소농도 측정결과 보고시기: 매월의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측정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 내용: 아래와 같음
  - ① 정수장 측정농도(일 1회): 참고 12
  - ② 보건소 측정농도(주 1회): 참고 13
  - ③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 법정수질자료 내 불소농도(월 1회): 참고 14
  - ④ 환경부 지정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수도꼭지 불소농도(월 1회): 참고 14
- 통보 대상: 보건복지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 사무국(한국건강증진개발원)



## 6 불소첨가의 중단과 재개

- 불소농도 측정결과 유지가 곤란하거나 시설 노후화, 고장 등으로 점검 수리가 필요한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정수장 또는 보건소의 불소농도 측정결과, 목표 불소농도 허용범위를 초과(자동농도측정 결과가 목표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동측정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경우에만함)하거나 시설 점검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즉시 불소첨가를 중단하고, 사업관리자 혹은 사업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보고
  - 사업관리자는 보고받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불소농도 측정 결과가 목표 불소농도 허용 범위를 초과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시설 점검·수리 시 수리 사유, 첨가 중단일자, 재개예정일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 유형별 불소첨가 중단기간 】

※ 유형별 평균 중단 기간은 아래와 같음, 아래 기간 내 보수를 마치고 재개하기를 권고함

유형	세부 항목 <sup>1)</sup>	평균 중단 기간 <sup>2)</sup>
점검	설비 종류와 무관	5 일
수리	약품저장 보조탱크(실내저장시설), 샘플링펌프	10 일
	정량펌프(액상투입장치), 불소첨가기(분말투입장치),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 시설, 탱크수위계, 인젝타, 가압수펌프	15 일
	모니터링장비(PLC, 콤바타, 통신), 불소약품 차단장치, 약품저장 메인탱크	20 일
	자동불소농도측정기, 불소 유량계	30 일
교체	샘플링 펌프	10 일
	불소첨가기(분말투입장치), 약품저장 보조탱크(실내저장시설),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탱크 수위계, 불소약품 차단장치, 인젝타, 가압수펌프	30 일
	정량펌프, 자동불소농도측정기, 모니터링 장비(PLC, 콤바타, 통신), 약품저장 메인탱크	60 일
	불소 유량계	90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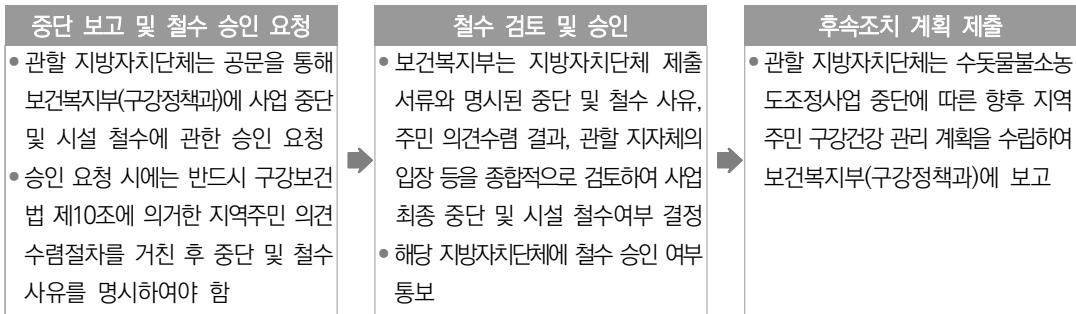
- 1) 상기 항목 외 설비의 점검·수리·교체 경우, 전문업체 의뢰를 통해 적정 소요기간 산정 및 적용
-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항목별 '평균 중단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및 향후 대책을 보건 복지부 구강정책과에 보고 및 협의해야함
- 3) 다수 항목에 대한 점검·수리·교체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최장 기간이 소요되는 항목 기준 준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에게 불소첨가를 재개하도록 조치

- 사업관리자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는 일시 또는 잠정중단 이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7 불화물첨가시설 등 철수 관련 사항

- 구강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최종 중단하고자 하는 사업 관리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후 승인 절차를 거쳐 불화물첨가시설 등 사업관계시설 철수



※ 상기 절차는 국비 지원시설에 한하며, 그 외 시설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

- 불화물첨가시설 등 사업관계시설을 철수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 준용
  - ※ 불화물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9.폐유독물질)'에 해당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8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 요청

- 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기술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필요시 기술지원단으로 기술지도 요청

※ 참고자료

- 한국건강증진재단. 2011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길라잡이.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자료실-발간자료-지침/교육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수돗물불소농도 조정 홍보 모음 자료집.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자료실-발간자료-홍보자료)
- 원광대학교, 한국건강증진재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효과조사. 원광대 이흥수. 2011.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자료실-건강증진연구보고서)

※ 참고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참고 11

**불화물첨가시설점검기록부(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관련)**

점 검 기 관 :  
 점 검 일 :  
 점 검 자 직 책 :  
 점 검 자 이 름 :  
 점검자전화번호 :

1. 정수장 명칭 :
2. 사용되는 화합물에 표시(✓)
  - 가. 응집제
    - 폴리염화알루미늄( ), 황산알루미늄( ), 알긴산나트륨( ),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 ),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
  - 나. 살균·소독제
    - 고도표백분( ), 액화염소( ), 차아염소산나트륨( ), 이산화염소( ), 오존( )
  - 다. 방청제
    - 인산염( ), 규산염( ), 인산염 및 규산염( )
  - 라. 그 밖의 제제
    - 수산화칼슘( ), 활성탄( )
  - 마. 그 밖의 화합물 :

3. 해당되는 란에 표시(✓) 및 기재
 

가. 불소농도측정장비 운영상태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나. 불소농도측정 횟수			회/일 _____
다. 조사당시의 불소농도			mg/L _____
라. 불소농도측정일지 기록상태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마. 불화물첨가장치의 상태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바. 주입점의 상태(관찰 가능한 경우)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사. 불소화합물 보관상태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아. 불화물첨가실 관리상태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자. 사용 불소화합물의 규격	적합 _____	부적합 _____	
차. 불화물첨가담당자의 안전관리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카. 전반적인 평가	만족 _____	불만족 _____	

4. 점검자 의견 :

참고 12

### 불소농도측정일지(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관련)

(    년    월    일)

정수장명칭		정 수 장																		
측정시점		사용불소제제						자동불소농도측정기						유( ) 무( )						
측정결과	측 정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불소농도 (ppm)																			
	불소 사용량 (kg)																			
	수돗물 생산량 (천톤)																			
	측 정 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불소농도 (ppm)																			
	불소 사용량 (kg)																			
	수돗물 생산량 (천톤)																			
측정기간별 불소첨가량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구 분		과소첨가·적정첨가 또는 초과첨가의 사유																	
	1일부터 10일까지		과소첨가 ( ) 적정첨가 ( ) 초과첨가 ( )																	
	11일부터 20일까지		과소첨가 ( ) 적정첨가 ( ) 초과첨가 ( )																	
	21일부터 말일까지		과소첨가 ( ) 적정첨가 ( ) 초과첨가 ( )																	

참고 13

### 불소농도측정기록부(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    년    월)

측정기관		보건소												
정수장 명칭		정수장												
측 정 결 과	측정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수도 꼭지 측정	불소농도 (ppm)												
		채취장소												
	정수장불소농도 (ppm)													
	조치사항													



세부사업내용

참고 14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측정 불소농도

(    년    월)

보건소명			보건소
측 정 결 과	환경부 지정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기관명	
		검사연월일	
		측정농도(ppm)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		검사연월일	
		법정 수질자료 내 불소농도(ppm)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www.waternow.go.kr>

## IX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

### 1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치과) 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위탁·운영 지원

### 2 사업대상

- 장애인 및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치매(F00-F03), 파킨슨 병(G20), 중증 근무력증 (G70) 환자 등)

\* 장애인에 준하는 전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치매(F00-F03), 파킨슨 병(G20), 중증 근무력증(G70) 환자 등)로 판단되는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서비스제공 가능하나 진료비는 미지원

### 3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 4 사업추진방법

#### 1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 설치 유형별 세부기준은 아래 [표 16], [표 17], [표 18]과 같음
- 시설 등의 효율적 설치 및 배치 등을 위하여 설계도 등을 전문기관(중앙의료원)에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완료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통보(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하며,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예산내역 및 사업 수행기간 등)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치과(대학)병원 내 전담운영조직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추진단’을 구성하여 개원 시까지 운영토록 조치(중앙, 권역 장애인구강 진료센터)

[표 16]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세부기준

구분	세부 내용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보건법 제 15 조의 2 제 1 항</li> <li>●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12 조의 3</li> </ul>
사업수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li> </ul>
재정지원 (국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비(신축, 리모델링)</li> <li>● 진료비, 운영비(센터, 사무국) 지원</li> <li>※ 설치비 및 진료·운영비 지원규모는 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신축 시 사전 부지 확보 필수</li> </ul>
설치기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12 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li> <li>● 장애인 환자의 치과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고 15]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li> </ul>
역할 (구강보건법 제 15 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 및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지침과 진료방향 등을 설정</li> <li>● 권역, 지역 센터와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진료센터의 활성화를 도모</li> <li>● 진단과 진료의 난이도가 높은 구강환자의 전문적 진료와 진료전달체계의 상위기관 역할 수행</li> <li>●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앙 사무국</li> </ul>
지정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b>지정신청서 작성·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받으려는 병원장이 별지 제 4 호 서식 작성</li> <li>* 시설·장비, 인력 명세, 운영계획서</li> <li>●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li> </ul>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b>평가위원단 구성·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li> <li>● 외부위원 포함 5 인 이상</li> <li>*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인은 평가위원에서 제외</li> </ul>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b>위탁기관 지정서 발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li> <li>* 별지 제 5 호 서식</li> </ul> </div> </div> <p style="font-size: 0.8em; margin-top: 10px;">※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p>



[표 17]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세부기준

구분	세부 내용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강보건법 제 15 조의 2 제 2 항</li> </ul>
사업수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li> </ul>
재정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비(신축 25 억 원, 리모델링 13 억 원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비 지원규모는 설치 방법(신·증·개축) 및 사업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신축 시 사전 부지 확보 필수</li> </ul> </li> <li>진료비, 운영비(센터) 지원 (예산 범위 내)</li> </ul>
설치기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12 조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나목·마목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li> <li>장애인환자의 치과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 할 수 있도록 [참고 15]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하고, 시도의 경우 설치비, 운영비 등에 대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 함</li> </ul> </li> </ul>
역할 (구강보건법 제 15 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li> <li>치과대학병원과 같은 수준 높은 의료진이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1 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 차 치과진료와 전신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li> <li>인접지역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li> <li>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를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진료 및 진료비 지원</li> </ul> </li> </ul>
지정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 -5px -5px 5px -5px;"><b>지정신청서 작성·제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받으려는 병원장이 별지 제 4 호 서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비, 인력 명세, 운영계획서</li> </ul> </li> <li>시·도지사에게 제출</li> </ul>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 -5px -5px 5px -5px;"><b>평가위원단 구성·심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지사</li> <li>외부위원 포함 5 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인은 평가위원에서 제외</li> </ul> </li> </ul>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margin: -5px -5px 5px -5px;"><b>위탁기관 지정서 발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지 제 5 호 서식</li> </ul> </li> </ul> </div> </div> <p>※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p> <p>※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지역 간 균형 및 접근성 고려와 재정지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설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부에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규설치 예산지원 계획이 있을 경우 설치 예정 전년도 3 월까지 설치 수요조회 할 예정</li> <li>수요조회 결과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많은 경우 예산지원(설치비, 운영비, 진료비 지원 등)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li> </ul> </li> <li>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기관에는 예산지원하지 않음</li> </ul>



[표 18]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세부기준

구분	세부 내용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 제 15 조의 2 제 2 항
사업수행주체	• 시도
재정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설치비(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1 억 8 천만원)
설치기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 12 조의 4)	•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서 장애인 환자의 일반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
역할 (구강보건법 제 15 조의 2)	• 장애인 환자의 일반 치과진료 • 인접지역 공공기관(보건소 등)과 협력·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장애인 구강진료 및 지원
지정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5px -5px 5px -5px;">지정신청서 작성·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받으려는 보건소장이 별지 제 4 호 서식 작성</li> <li>* 시설·장비, 인력 명세, 운영 계획서</li> <li>• 시·도지사에게 제출</li> </ul>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5px -5px 5px -5px;">평가위원회 구성·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li> <li>• 외부위원 포함 5 인 이상</li> <li>*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이해관계인은 평가위원에서 제외</li> </ul>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margin: -5px -5px 5px -5px;">위탁기관 지정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li> <li>* 별지 제 5 호 서식</li> </ul> </div> </div> <p style="margin-top: 10px;">※ 위탁기관 선정 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 지정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p>

##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해당 보건·의료기관내 증·개축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며, 장애인 치과진료와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 전문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비[참고 15]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시설 및 장비기준([표 12], p40) 준용
- 인접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등)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장애인구강진료 체계 구축

- 지역 구강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 ※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지역거점기관으로써 해당 지역 내 장애인시설 및 보건소 등과 협약 등을 통한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해당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치과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 담당
  -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 및 개발
    -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서비스모델 구축
    - 장애인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모델 구축

### 3 진료비 지원

#### 1) 지원대상

- 중앙,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진료를 받는 장애인

#### 2)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 미용 목적의 진료는 진료비 지원하지 않음

[표 19] 치과영역 중증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정도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뇌전증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복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참고 15

## 중앙/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 1. 인력기준

가. 치과의사(전문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행정(사회복지사 포함)

### 2. 시설·장비기준

#### 가. 시설

- 치과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대기실,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상담실, 준비실, 행정실, 의사대기실, 회의실 등을 갖추어야 함
- ※ 장애환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동선과 공간을 고려하여 시설 장비 등을 배치

#### 나. 장비

용도	장비명
기본 진료장비 및 장애인 진료장비	장애인용 치과유니트 체어(dental unit & chair), 고속/저속 엔진 (high & low speed handpiece), 흡입기 (suction), 초음파 치석 제거기(ultrasonic scaler), 컴퓨터 및 모니터, 에어 콤푸레셔(air compressor), 중앙 공급식 흡입기(Vacuum suction), 휴대용 흡입기 (portable suction), 천정형 수술 등(Operating light) 등
방사선 장비	구내방사선 촬영기, 구외방사선 촬영기(디지털 파노라마 촬영기), 이동식 치과 방사선 촬영기 등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 장비	전신 마취기, 환자 감시장치, 제세동기(Defibrillator), N2O 마취기, 체온조절기, 심전도기, 인공호흡기, 응급키트 등
소독 및 멸균 장비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에틸렌옥사이드 멸균기(Ethylene Oxide gas sterilizer), 초음파 세척기, 핸드피스 소독기, 손세척기, 기구 및 전신마취비품 세척기 등
치과 치료기구	알지네이트 혼합기(Alginate mixer),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전동 근관치료 장비(전동화 일모터, 근관장 측정기 등), 아말감 혼합기 (amalgamator), 치과용 광중합기(light curing), 전기수술기, Laser 수술기, 방사선 판독기 등
차량*	장애인 치과치료차량(내부 진료장비포함) 등
기타	기타 소기구(보존, 치주, 보철 등 제반 소기구 세트)

\* 장애인치과치료차량 및 차량의 장비 등은 해당 병원 및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 참고 16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사업자 선정연도	지역(병원명)	개소	센터 담당자 연락처
'09년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11.5 월	062-530-5513
'10년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11.1 월	041-550-0127
'11년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 병원)	'12.4 월	051-240-6801
'11년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13.4 월	063-250-2882
'11년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12.5 월	031-8005-2937
'12년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15.7 월	053-600-7115
'13년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가천대길병원 치과병원)	'16.1 월	032-460-3882
'14년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15.12 월	033-640-3111
'15년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제주대학교 병원)	'17.12 월	064-717-2716
'18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8 월	02-2072-4711
'19년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21년 예정	055-360-5016
'19년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20.7 월	042-366-1112
'19년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청주한국병원)	'20.12 월	043-222-6170
'19년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울산대학교병원)	'21년 예정	052-250-7782
'20년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명지병원)	'21년 예정	031-810-5114

# X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 1 목적

-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 관리를 중심으로 기타 보건의료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사업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 :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 단,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 통합시 보건소 포함
- 보건지소 : 읍·면지역(동지역은 지원제외)  
※ 신청사항등 상세내용은 “202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참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816)

## 3 우선지원 기준

- 치과 전문인력 확보지역
  - 치과 의사 또는 치과공중보건의사 1인 이상(계약직 포함)
  - 치과위생사 1인 이상(비정규직 포함)
  - 운전직 1인 이상 등
- 지속적인 지방비 확보(진료차량 운영비 포함) 가능지역
-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역
  -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으로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양호한 지역
  -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실시지역 또는 추진 중인 지역

## 4 시설과 장비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시설·장비[표 20] 참조

## 5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운영


-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 활성화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 제공
  - 이동성이 제한된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대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 운영
- ※ 지원받은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을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세부사업 내용

[표 20]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시설·장비

필수장비	기타 장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과용 유닛 체어 2 대</li> <li>- 진료용 의자</li> <li>- 공기압축기, 석션</li> <li>- 압축물탱크</li> <li>- 고속엔진 및 핸드 피스</li> <li>- 저속엔진 및 핸드 피스</li> <li>- Amalgamator(아말감 메이터)</li> <li>- 광중합조사기</li> <li>- 레진 set</li> <li>- 초음파 스케일러 등</li> </ul> </li> <li>• 진단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X-ray 촬영기</li> <li>- 현상기</li> <li>- 차폐벽(납)</li> <li>- 납복 등</li> </ul> </li> <li>• 소독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압멸균소독기 등</li> </ul> </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물품 보관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치료 진단기기 및 재료</li> <li>- 노인의치(틀니)사업 장비</li> <li>- 치아홈메우기 사업 장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외부에 '치과 이동진료' 차량이라는 표시 부착</li> <li>- '2020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안내' 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함'으로 규정하고 있음</li> </ul>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구강보건 |

---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ART

03

# 실적보고

I 실적보고

# I 실적보고

## 1 목적

- 수행실적보고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2 실적보고

### 1 구강보건사업 실적보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실적 입력
  - ※ 2016년부터 PHIS와 실적보고 서식이 일원화 되면서 공문 상 실적보고는 받지 않고 있으므로 PHIS 시스템에 실적을 충실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일정
  - 일정 : 연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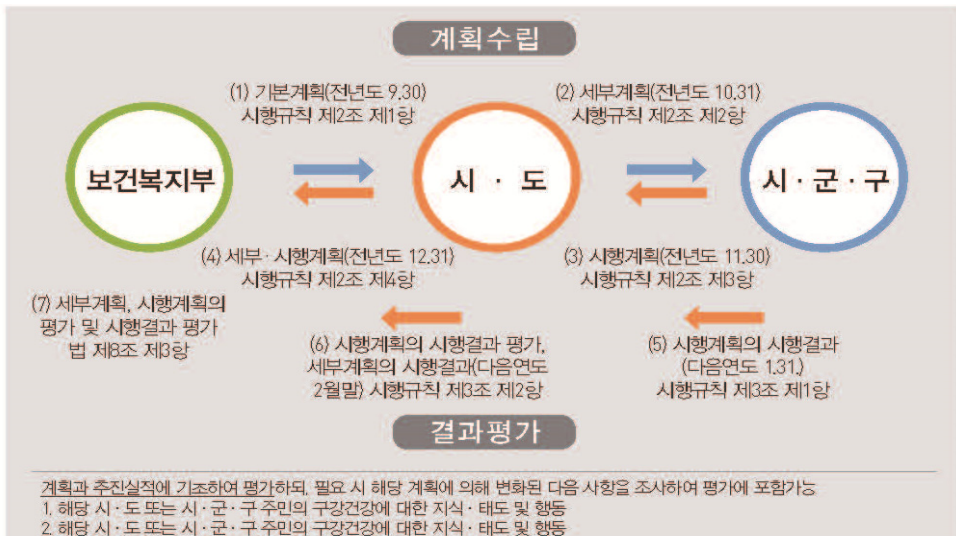
구분	보고 기한	보고 내용
상반기 현황보고	2021. 7. 20. 까지	2021. 1.1.~ 6.30. 까지 실적
하반기 현황보고	2022. 1. 20. 까지	2021. 1.1.~ 12.31. 까지 실적

- 단, [보고3] 서식만 '22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로 보고
- ※ 콜센터 전화번호 : 1566-3232
- ※ 사업의 실적보고 목록은 아래와 같다.

서식번호	서식명	페이지	비 고
[보고 1]	구강보건사업 홍보 실적	84	PHIS 입력
[보고 2]	구강보건사업 실적 1. 구강보건사업실적 2. 불소용액양치사업 3. 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	85~86	PHIS 입력
[보고 3]	초등학교 양치시설 운영 실적	87	공문보고
[보고 4]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87	PHIS 입력
[보고 5]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88	PHIS 입력

## 2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 추진 배경
  - 구강보건법(2015년 개정)과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년 6월 발표)에 따라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시행·평가 체계 강화
- 법적 근거
  - 「구강보건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구강보건법시행령」 제2조,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수행 체계



Chapter  
03

실  
적  
보  
고

##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현황실적
  - 병원은 매 익월 10일까지 지자체 보고, 지자체는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복지부 보고
- 사업비 정산
  - 병원은 사업종료 익년 2월 10일까지 지자체 보고, 지자체는 사업종료 익년 2월 15일까지 복지부 보고
  - ※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 발송

### 3 보고서식

#### 보고 1

#### 구강보건사업 홍보 실적

시 도	시· 군· 구	보 건 소	영상매체 <sup>(1)</sup> 홍보(건)	활자매체 <sup>(2)</sup> 홍보(건)	구강보건의날 행사 실시 여부(0,1) <sup>(3)</sup>
총계					

〈작성요령〉

- (1) 영상매체 : 방송(TV, 라디오, 대중교통 매체), 인터넷 등 영상물을 송출(게재)한 건 수
- (2) 활자매체 : 신문, 책자, 리플릿, 포스터 등 인쇄물을 통해 정보를 게재(보도, 배포)한 건 수
- (3) 구강보건의 날 행사실시 여부 : 실시(1), 미실시(0)로 표기

보고 2

## 구강보건사업 실적

### 1. 구강보건사업실적

시·도	시·군·구	보건소	유형 <sup>(5)</sup>	대상별	계 <sup>(6)</sup> (A+B+C+D)	구강보건교육(A)		예방서비스(B)					치료서비스(C)			기타(D)	
						횟수	명	불소용액양치사업(명)	불소도포(명)	스케일링(명)	치면정 <sup>(7)</sup> 술(명)	홈메우기(명)	기타(명)	우식치료(명)	치주치료(명)	발치등기타(명)	구강검진(명)
<b>총계 (1)+(2)+(3)+(4)</b>																	
				일반 (1)													
				장애인 (2)													
				저소득층 (3)													
				저소득장애인 (4)													

〈대상구분〉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
- \* 저소득층 :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저소득 장애인 : 장애인 등록자이면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실적 산출요령〉

- (1) 일반 : 비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
- (2) 장애인 :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
- (3) 저소득층 : 비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인 대상자
- (4) 저소득장애인 : 장애인이면서 저소득층인 대상자
- (5) 유형(입력유형) : 보건소 구강보건센터(1), 보건소 구강보건실(2), 그 외(3)
- (6) 계 : 인원(명)만 포함하며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 (7) 치면세정술 : 치면세마, 전문가 칫솔질, pmtc 등
- (8) 타기관 의뢰 : 보건소에서 진료가 어려워 타 치과 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 2. 불소용액양치사업

(단위 : 명, 개소, 회)

시도	시·군·구	보건소	총인원 <sup>(1)</sup> (a+b)	학생수 <sup>(2)</sup> (a)	기타인원 <sup>(3)</sup> (b)	총 시설수 (c+d)	초·중· 특수 학교수 (c)	기타 (경로당 등) (d)	총 방문 횟수 <sup>(4)</sup> (e+f)	학교 방문 횟수 <sup>(e)</sup>	기타 (경로당 등) 방문 횟수 <sup>(f)</sup>
총계											

\* 인원은 연인원으로 기재

- (1) 총인원은 1. 구강보건사업 실적의 불소용액양치사업 인원과 동일해야함
- (2) 학생 수는 초·중·특수학교에서 불소용액양치를 하는 인원수 기재
- (3) 기타인원은 초·중·특수학교 외에 경로당 등에서 불소용액양치를 하는 인원을 말하며 실적에 포함되는 인원은 정기적(주 1 회 또는 매일 1 회)으로 불소용액양치를 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여야함. 개별적으로 불소용액양치액을 받아가는 인원 포함(단, 장기적이며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자에 한함)
- (4) 방문횟수는 보건(지)소의 담당자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는 횟수를 기록함

## 3.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시도	시·군·구	보건소	총계 (A+B)	불소도포(명)					스케일링(명)			
				계 (A)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계 (B)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총계												

(1) 총계는 1. 구강보건사업 실적의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인원과 동일해야함

※ 유아 : ~6 세, 아동·청소년 : 7~18 세, 성인 : 19~64 세, 노인 : 65 세 이상

보고 3

초등학교 양치시설 운영 실적 보고

시 도	시· 군· 구	보건소	학교명	구강보건교육실적			보건소 담당자 출장방문 횟수 <sup>(2)</sup> (회)	불소용액양치	
				학부모 (명)	학생 (명)	교사 <sup>(1)</sup> (명)		여부 (0,1) <sup>(3)</sup>	수혜인원 (명)
총계									

- (1) 교사 :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포함
- (2) 보건소 담당자 출장방문 횟수 : 학교방문 횟수(여러 명이 한 학교를 같은 날 방문 : 1회)
- (3) 불소용액양치 실시여부 : 실시(1), 미실시(0)



실  
적  
보  
고

보고 4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시 도	시· 군· 구	보건소	학교명	구강 보건 교육 <sup>(1)</sup> (명)	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			타기관 의뢰 <sup>(3)</sup> (명)
					불소 도포 (명)	스케 일링 (명)	치면 세정술 <sup>(2)</sup> (명)	홈에우 기 (명)	우식 치료 (명)	치주 치료 (명)	발치 등 기타치료 (명)	
총계												

- (1) 이론 및 실기(칫솔질 등) 교육 포함
- (2) 치면세정술 : 치면세마, 전문가 칫솔질, pmtc 등
- (3) 타기관 의뢰 : 학교구강보건실에서 진료가 어려워 타 치과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보고 5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실적

시 도	시· 군· 구	보 건 소	학 교 명	구강 보건 교육 <sup>(1)</sup> (명)	예방서비스					치료서비스			타기관 의뢰 <sup>(3)</sup> (명)
					불소 도포 (명)	스케 일링 (명)	치면 세정술 <sup>(2)</sup> (명)	홈에우기 (명)	기타 (명)	우식 치료 (명)	치주 치료 (명)	발치 등 기타치료 (명)	
총계													

(1) 이론 및 실기(치솔질 등) 교육 포함

(2) 치면세정술 : 치면세마, 전문가 칫솔질, pmtc 등

(3) 타기관 의뢰 :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진료가 어려워 타 치과병·의원으로 의뢰한 경우



## 부 록

- Ⅰ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 Ⅱ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 Ⅲ 전문인력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 Ⅳ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지침 및 주요지표산출방법
- Ⅴ 양치시설 표준설계안
- Ⅵ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I

## 서비스 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

### 1 개인정보 보호 안내

#### 1 기본원칙

- 시도 및 시·군·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2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개인정보 안전 조치 의무
  -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 동의획득 상세〉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상자관리, 건강상담 및 교육,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나.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 나. 건강정보 : 사업별 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가.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달성할 때까지  
 ※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일에 차이가 있어, 보유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나.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1.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전화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 2. 정보의 제공 대상 : ○○○ 주민복지회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서비스 연계 해당 기관(보건소에서 수정하여 쓰도록 함)
- 3. 정보의 이용목적 : 타 기관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 4.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

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 1. 정보의 제공 범위 : 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
-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업의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구의 진행기간

다. 전자정보의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전자화 정보 관리는 지역보건법 제 30 조의 4 에 의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행 관리 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보건소는 수집한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 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질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사업 효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통계 생성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 건강정보: **사업별 건강조사기록, 서비스 제공 기록**
- ※ 귀하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II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 1 구강보건시설 인프라 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보건소		학교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양치시설
전국	660	64	132	348	51	65
서울	13	5	7	-	-	1
부산	30	3	9	11	2	5
대구	13	-	6	6	1	-
인천	30	-	10	14	2	4
광주	13	5	-	6	2	-
대전	9	-	1	5	-	3
울산	16	2	3	9	2	-
경기	80	8	18	33	6	15
강원	61	4	13	31	4	9
충북	49	8	5	27	5	4
충남	62	9	6	40	5	2
전북	45	5	9	24	5	2
전남	74	-	16	49	6	3
경북	78	8	12	45	5	8
경남	62	7	10	37	6	2
제주	23	-	6	11	-	6
세종	2	-	1	-	-	1

\* 상기 내역은 국고보조금 설치 지원시설에 한함

# Ⅲ 전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 1 보건소

(단위 : 명)

직종별	구 분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인구 50 만명 이상인 시의 구 및 인구 30 만명 이상의 시	인구 30 만명 미만의 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의 사		3	3	2	2	1	6
치 과 의 사		1	1	1	1	1	1
한 의 사		1	1	1	1	1	1
조 산 사		(1)	(1)	(1)	(1)	(1)	(1)
간 호 사		18	14	10	14	10	23
약 사		3	2	1	1	1	2
임상병리사		4	4	3	4	2	4
방사선사		2	2	2	2	2	3
물리치료사		1	1	1	1	1	2
작업치료사		1	1	1	1	1	2
치과위생사		1	1	1	1	1	1
영 양 사		1	1	1	1	1	2
간호조무사		(2)	(2)	(2)	(2)	(2)	(6)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	-	1
위생사		(3)	(3)	(2)	(2)	(2)	(2)
보건교육사		1	1	1	1	1	1
정신건강전문요원		1	1	1	1	1	1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기능사		(1)	(1)	(1)	(1)	(1)	(1)
응급구조사		-	-	-	-	(1)	1

※ 비고

1. 이 기준은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기준은 공중보건의를사를 포함한다.
3. 조산사 및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전체 인력의 범위에서 간호사에 같음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위생사의 기준은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기능사 및 응급구조사의 기준 중 ( )로 표시된 기준은 해당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6. 영양사는 인구 5 만명 미만의 군(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군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2 보건지소

(단위 : 명)

구 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보건지소	1	1	1	3	1
통합보건지소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3×관할 읍·면수	1×관할 읍·면수

※ 비고

1. 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공중보건으로서의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 기준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 IV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지침 및 주요지표 산출방법

## 1 구강검진 지침

### 1 구강검진의 목적

- 구강 상태를 가능한 한 정확히 진찰하여 기록함으로써 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계속적 예방·치료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2 구강검진 요령

- 치과용 유니트 제어에 환자를 앉히고, 치과용 조명등 아래서 치경과 탐침 및 에어 시린지, 물 사출기를 이용하여 치아를 하나씩 정밀검사하며 구강건강 상태 및 위생상태 등을 검사
- 구강 내 방사선 사진촬영 및 관독을 요하는 진찰은 여건이 되는 관할 보건소나 치과진료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근래에는 구강카메라를 이용하여 구강 내 부위별 사진을 찍어 자동으로 기록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 3 구강검진 및 진료기록부 작성

- 개인용 구강검사 기록부를 사용하여, 환자의 구강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기록 보관 및 통계표 작성에 이용토록 함.

### 4 구강검진 내용: 매년 계속관리 주기마다 구강검진을 해야 함.

- 유치 및 영구치 우식상태 및 충전상태
- 치주상태(CPITN)



- 구강환경관리능력(PHP-S)
- 구강환경관리 습관
- 치아홈메우기 시행여부 등을 조사하며
- 예방 및 치료계획 등 개인 환자의 계속구강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번 처치/진료 상황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 예방처치계획의 작성 예(1 학년)

1. 구강보건교육
2. 칫솔질 교습(회전법) × 3 회
3. 불소도포(4 회)
4. 치아홈메우기  $\frac{6}{10}$
5. 예방 충전/전색  $\frac{1}{1}$
6. 우식활성검사(스나이더, 점조도)
7. 식이조절 × 1 회

## 5 구강검사 기준

### 1) 치아상태 검사기준

치아의 어느 한 부분이 육안으로 관찰되거나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탐침으로 탐지될 경우에는, 구강 내에 현존하는 치아로 간주하며, 영구치와 유치가 공존할 때에는, 영구치아만을 현존치아로 간주함

- 건전치아(S, s, 0)
  - 진행 중인 우식병소가 없고 우식증을 처치한 흔적도 없는 치아를 건전치아로 판정하고, 건전 영구치아를 “S” 또는 “0”으로, 건전유치를 “s” 또는 “0”으로 기록
- 우식치아(D, d, 1)
  - 연화치질을 탐지할 수 있고, 유리 범랑질을 확인할 수 있는 치아를 우식치아로 판정하고 우식 영구치아를 “D” 또는 “1”로, 우식 유치를 “d” 또는 “1”로 기록
  - 인접면 우식은 탐침을 통해 연화치질 및 유리범랑질을 확실히 탐지 할 수 있는 경우에 우식병소로 판정
  - 충전물 주변에 2차 우식이 발생한 치아, 충전된 치아 면 이외 독립적인 치아면에 우식병소가 발생한 치아,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임시 충전물을 가지고 있는 치아도 우식치아로 판정

- 머지않아 생리적으로 탈락될 유치라도 우식병소가 있을 경우에는 우식유치로 판정
  - ※ 우식병소로 판정하지 않는 치아결손
    - 백색반점 또는 백묵양반점
    - 백색반점 또는 거친 반점
    - 착색소와 또는 착색 열구
  - ※ 탐침 끝이 걸려도 연화치질과 유리 법랑질을 확인할 수 없는 소와 나 열구는 우식병소로 판정하지 않음
- 발거대상우식치아(I, i, 2)
  - 충전으로 보존할 수 없는 우식치아를 발거대상 우식치아로 판정하고 발거대상 우식영구치를 “1” 또는 “2”로, 발거대상 우식유치를 “i” 또는 “2”로 기록함
  - 잔존치근도 발거대상 우식치아에 속하며, 유치의 잔존치근은 후계승 영구치아가 맹출되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발거대상우식치아로 봄
  - ※ 우식증 통계지표 산출과정에서는 발거대상우식치아를 우식치아에 포함시켜서 계산함
- 우식경험충전치아(F, f, 3)
  - 영구 충전 재료로 충전되어 있고 충전물 주위에 우식증이 발생되어 있지 않은 치아와 우식으로 인하여 인조치관을 장착시킨 치아를 우식경험 충전치아로 판정하고, 우식경험 충전 영구치를 “F” 또는 “3”으로, 우식경험충전 유치를 “f ” 또는 “3”으로 기록
  - ※ 유치나 영구치에 관계없이 우식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조치관을 장착시킨 치아는 우식경험충전치아로 보지 않고 우식비경험충전치아 로 판정
- 우식경험상실치아(M, 4)
  - 우식증으로 인하여 발거된 영구치를 우식경험상실치아로 판정하고 “M” 또는 “4”로 기록
  - ※ 상실된 유치는 유치 우식증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유치의 상실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병력으로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우식비경험상실치아”로 간주
- 우식비경험상실치아(A, 5)
  - 유치가 이미 발거된 후 맹출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치가 맹출되어 있지 않은 치열부분과, 우식이외의 원인(외상, 선천성 무치증, 치주병 및 치열교정을 위한 발치)으로 상실된 영구치아를 우식비경험 상실치아로 판정하여 “A” 또는 “5”로 기록하고, 우식경험치아로 계산하지 않음
- 전색치아(6)
  - 소와 또는 열구가 치면열구 전색재로 전색된 경험이 있는 치아를 전색치아로 판정하고 “6”으로 기록

※ 파절, 마모 등으로 전색제의 일부만 남아 있어도 우식이 없는 한 전색치면으로 판정한다. 전색제 하부에 레진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사진 상으로 판정하기 불가능 하므로, 전색 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색치면으로 보도록 함

● 우식비경험치치치아(X, x, 7)

- 우식 이외의 원인(외상, 미모장애, 고정가공의치(틀니), 지대치, 교정밴드장착)으로 인조치관이나 밴드를 장착하고 있는 치아를 우식비경험치치치아로 판정하고 영구치는 “X” 또는 “7”, 유치는 “x” 또는 “7”로 기록

● 미맹출치아(8)

- 상실의 기억이 없는데 구강 내에 보이지 않는 모든 치아는 치아맹출시기를 참조하여 미맹출치아로 판정하고, “8”로 기록

※ 제3대구치의 경우 방사선 사진상으로 25세를 전후로 하여 25세가 지나도 제3대구치가 없으면 선 천성결손으로 하고, 그 이전 연령을 미맹출치아로 표기함

**2) 치주조직상태 검사기준 : 만 12세(중학생) 이상부터 검사함**

● 건전치주조직(0): 치은출혈, 치석, 치주낭 등의 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삼분악의 치주조직을 말하며, 0으로 기록한다.

● 치면세균막/출혈치주조직(1):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치석도 부착 되어 있지 않으나,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 한 후에 치은에서 출혈되는 삼분악의 치주조직을 출혈치주조직으로 판정하여, 1로 기록한다. 치면세균막 관리로도 해결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치석형성치주조직(2): 육안으로 직접 관찰되는 치은연상치석이나 직접 관찰되지 않는 치은연하치석이 부착되어 있는 치주조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고안한 치주낭심 측정기의 흑색부의 일부가 덮이거나 흑색부의 전부가 덮일 정도로 깊은 치주낭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치은연상치석이나 치은연하치석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출혈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치석형성치주조직으로 판정한다. 예방목적의 치면 세마를 요하는 정 도의 치주상태에 2점을 부여한다.

● 천치주낭형성치주조직(3): 4~5mm깊이의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는 치주조직을 말한다. 한 삼분악의 검사대상 치주조직에 형성된 치주낭의 가장 깊은 부위의 깊이가 4~5mm일 경우에는, 치석부착여부나 치은출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천치주낭형성 치주조직으로 판정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고안한 치주낭심측정기의 흑색부에 치은연이 위치할 정도의 치주낭이 형성된 치주조직을 천치주낭형성 치주조직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3으로 기록한 다. 치주소파 또는 치료 목적의 치면세마, 치근관막술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심치주낭형성치주조직(4):깊이가 6mm이상인 치주낭이 형성되어 있는 삼분악의 치주조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고안한 치주낭심측정기로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할 경우에, 흑색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삼분악에 서는 치석부착여부나 치은 출혈여부를 더 확인하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다. 4로 기록한다. 치주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치료를 요함을 뜻한다.

※ code는 상기 검사 기준으로 검사한 구강 내 부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는 환자가 어떠한 치주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치면세균막 관리가 필요하면 CPITN1, 치면세막이 필요하면 CPITN2, 치주소파술/심한 스케일링이 필요하면 CPITN3, 치주수술이 필요하면 CPITN4로 기록하게 된다.

### 3) 구강환경관리능력 검사기준

- 구강환경관리지수란 구강환경을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지표이다. 보통 PHP(patient hygiene performance)라는 약자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치면세균막지수라고도 한다.

상악우측제1대구치(16), 상악우측중절치(11), 상악 좌측제1대 구치(26), 하악좌측 제1대구치(36), 하악좌측중절치(31), 하악우측제1대구치(46)의 일면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된 정도를 평점하여 산출한 평균치를 개인의 구강환경관리 능력지수로 한다. 이러한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를 산출할 목적으로 상악 양측 제1대구치에서는 협면을, 하악 양측 제1대구치에서는 설면을, 상하악 중절치에서는 순면을 각각 검사하여 평점한다. 그러나, 제1대구치가 결손되었을 경우에는, 제2대구치의 치면을 검사한다. 제2대구치도 결손 되었을 때에는, 제3대구치의 치면을 검사한다. 절치가 결손되었을 경우에는, 인접한 절치의 치면을 검사한다. 그리고 검사대상치면을 각각 근심부, 원심부, 치은부, 중앙부, 절단부의 5개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치면세균막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점하고, 치면세균막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1점으로 평점한다. 그러므로 개인별 구강환경관리능력지수의 최저치는 0점이고, 최고치는 5점이다.

#### 치면 세균막 부착도 평점기준

미부착	0점
부 착	1점

- 구강건강관리 능력 / 습관 통계  
개인별로 각 항목마다 구강건강관리능력과 습관을 기록한 후 학년별, 전교생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도록 한다.(예 : 회전법 칫솔질을 잘 하고 있는 아동의 수 / 비율 등을 산출한다).



[ 구강검진 기록양식 ]

### 구강검사기록부

일련번호 \_\_\_\_\_

학 교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성명	
초등학교	반	반	반	반	반	반	성별	남 / 여
	번	번	번	번	번	번	생년	년

전입	전출	주소	전화번호

<1학년> 검사일 20\_\_년 \_\_월 \_\_일 검사자 \_\_\_\_\_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2학년> 검사일 20\_\_년 \_\_월 \_\_일 검사자 \_\_\_\_\_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3학년> 검사일 20\_\_년 \_\_월 \_\_일 검사자 \_\_\_\_\_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4학년> 검사일 20\_\_년 \_\_월 \_\_일 검사자 \_\_\_\_\_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5학년> 검사일 20\_\_년 \_\_월 \_\_일 검사자 \_\_\_\_\_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치아

1회: 월 일

2회: 월 일

3회: 월 일

6	1	6													
			6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6학년> 검사일 20\_\_년 \_\_월 \_\_일 검사자 \_\_\_\_\_

1. 우식검사

18	17	16	15	14	13	12	11	21	22	23	24	25	26	27	28
			55	54	53	52	51	61	62	63	64	65			
			85	84	83	82	81	71	72	73	74	75			
48	47	46	45	44	43	42	41	31	32	33	34	35	36	37	38

2. 구강환경관리능력검사(PHP-s)

검사처야                      1화: 월 일                      2화: 월 일                      3화: 월 일

6   1          6 --- --- 1          6   6			
---	--	--	--

협(순)측                      설측                      평점 : /6=                      평점 : /6=                      평점 : /6=

3. 구강건강관리능력/습관조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칫솔질방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칫솔질시기(평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사용중인 칫솔	□□ 적/부	□□ 적/부	□□ 적/부	□□ 적/부	□□ 적/부	□□ 적/부
4 사용중인 세치제	□□ 적/부	□□ 적/부	□□ 적/부	□□ 적/부	□□ 적/부	□□ 적/부
5 권장구강위생용품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우식활성검사결과 (구강미생물결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불소용액양치사업 참여여부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참여 / 비참여
8 구강보건교육내용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부  
록

### 진료기록부

진단	<input type="checkbox"/> 다발성 치아우식증 <input type="checkbox"/> 치은염 <input type="checkbox"/> 부정교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방처치 및 치료계획	<input type="checkbox"/> 불소 도포 <input type="checkbox"/> 칫솔질 교습 <input type="checkbox"/> 식이 조절 <input type="checkbox"/> 예방충전/전색 (            ) <input type="checkbox"/> 치면세마 <input type="checkbox"/> 타 치과의료기관 의뢰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	--	-------------------	--

일 자	학년 / 반	진 료 내 용	시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치주검사(CPITN) ※ 만 12세 이상만 해당

〈중학교 1학년〉 검사자 \_\_\_\_\_

검사치아                  일자 : \_\_\_\_월 \_\_\_\_일

6	1	6
6	1	6


〈중학교 2학년〉 검사자 \_\_\_\_\_

검사치아                  일자 : \_\_\_\_월 \_\_\_\_일

6	1	6
6	1	6


〈중학교 3학년〉 검사자 \_\_\_\_\_

검사치아                  일자 : \_\_\_\_월 \_\_\_\_일

6	1	6
6	1	6




부  
록

## 2 치아우식증 관련 주요지표 산출방법

### 1 영구치관련 통계지표

※ 우식치아 D, 우식경험상실치아 M, 우식경험충전치아 F, 발거대상우식치아 I 등에 대하여,  
치아 T의 개수를 「 $\Sigma T$ 」라고 할 때,  
우식영구치수 =  $\Sigma D + \Sigma I$   
우식경험영구치수 =  $\Sigma D + \Sigma M + \Sigma F + \Sigma I$

#### 1) 영구치 우식경험자율(DMF rate)

$$= \frac{\text{1개 이상의 우식경험영구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수}}{\text{피검자수}} \times 100$$

#### 2) 우식경험영구치율(DMFT rate)

$$= \frac{\text{우식경험영구치수}}{\text{피검영구치수(상실치 포함)}} \times 100$$

#### 3)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 \frac{\text{우식경험영구치수}}{\text{피검자수}}$$

#### 4) 우식영구치율(DT rate)

$$= \frac{\text{우식영구치수}}{\text{우식경험영구치수}} \times 100$$

#### 5) 처치영구치율(FT rate)

$$= \frac{\text{처치영구치수}}{\text{우식경험영구치수}} \times 100$$

#### 6) 상실영구치율(MT rate)

$$= \frac{\text{상실영구치수}}{\text{우식경험영구치수}} \times 100$$

### 2 유치관련 통계지표

※ 우식유치 d, 발거대상우식유치 i, 우식경험충전유치 f 등에 대하여, 어떤 치아 t의 개수를 「 $\Sigma t$ 」라고 할 때,  
우식유치수 =  $\Sigma d + \Sigma i$   
우식경험유치수 =  $\Sigma d + \Sigma i + \Sigma f$

1) 유치우식경험자율(df rate)

$$= \frac{\text{1개 이상의 우식경험유치를 가지고 있는 자의 수}}{\text{피검자 수}} \times 100$$

2) 우식경험유치율(dft rate)

$$= \frac{\text{우식경험유치수}}{\text{피검유치수}} \times 100$$

3) 우식경험유치지수(dft index)

$$= \frac{\text{총 우식경험유치수}}{\text{피검자수}}$$

4) 우식유치율(dt rate)

$$= \frac{\text{우식유치수}}{\text{우식경험유치수}} \times 100$$

5) 처치유치율(ft rate)

$$= \frac{\text{충전유치수}}{\text{우식경험유치수}} \times 100$$

3 학년별 우식증 통계 산출여부

학 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유치우식증 통계	○	○	○	○	-	-
영구치우식증 통계	(○)	(○)	(○)	○	○	○

4 통계지표 산출방법

1) 기존 통계지표 산출 프로그램 사용하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이용하여 통계지표 산출
  - 시스템 운영 기관(사회보장정보원) 구강보건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 대한보건치과위생사회, 보건소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데이트 내용을 입수 할 수 있음

2) 직접 산출하기

- 수작업으로 산출하기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기
  - 통계 프로그램(SPSS 통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기
- ※ 가급적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혹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 치과대학 예방치학 교실로부터의 자문을 구할 것



## V 양치시설 표준설계안

※ 본 설계안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수행한 양치시설 설계 및 운영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2014)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1 목적

- 치아우식증, 치주질환과 같은 중대 구강상병은 아동 시기에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형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함. 이는 학생들이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양치시설의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이루어 질수 있음
- 접근성, 기능성 안전성을 개선한 양치시설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를 개선하여 구강건강 향상에 이바지

### 2 양치시설 설치의 중요성

- 칫솔질은 구강상병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고, 이는 식사 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바 있음
- 아동칫솔질 실천율에 대한 효과
  -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하루 2회 칫솔질 실천한 결과, 2년 후 우식경험 영구치면수가 31% 유의하게 낮아짐(중국, Rong et al, 2003)
  - 21개월 동안 학교기반 칫솔질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 학교에 비해 사업 학교 아동의 치아우식증이 11~21% 정도 감소(영국, Jacksoet al, 2005)
- 양치시설이 개선된 초등학교 학생은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일반초등학교 학생 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한국건강증진재단, 2013)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 양치시설 설치초등학교 64.1%, 일반초등학교 32.7%

- 학생들이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이유로 집에 비해 양치시설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응답(한국건강증진재단, 2012),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기능성이 높은 양치시설의 설치 운영이 필요
- 양치시설 설치·운영은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손 씻기를 병행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등 개인위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일 칫솔질 횟수가 증가할수록 식사 전 비누이용 손 씻기 빈도와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이용 손 씻기 빈도 증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 3 양치시설 설치 시 고려 사항

#### 1 접근성

- 양치시설이 급식실과 교실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할 경우 접근성이 높음.
- 복도형이 교실형보다 접근성이 높음.
- 동 시간에 여러 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을 확보
- 장애가 있는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 2 편리성

- 연령에 성장을 고려한 높이로 차등 설치
- 겨울철 동파발생과 편리한 이용을 고려하여 온수 공급
- 입가의 물을 옷으로 닦지 않도록 핸드타월 혹은 핸드드라이어 설치
- 불소용액양치 분배기 비치



### 3 안전성

#### ● 개수대

- 개수대 깊이가 낮을 시 물이 바닥으로 튀어 미끄러짐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개수대 깊이를 충분히 확보
- 개수대 모서리를 둥글게 제작하여 안전상 문제 예방

#### ● 바닥

-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턱을 없애 안전상 문제 예방

#### ● 배수시설

- 절수용 수도꼭지 및 배수구 물 튀김 방지 시설을 사용하여 개수대 물 넘침 방지
- 동 시간에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한 배수시설 확보

### 4 위생성

- 개인 칫솔, 컵을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개별 보관하는 것이 위생적
- 개인 칫솔과 컵 등을 반 별로 보관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 불소용액에 부식되지 않는 재제를 이용하여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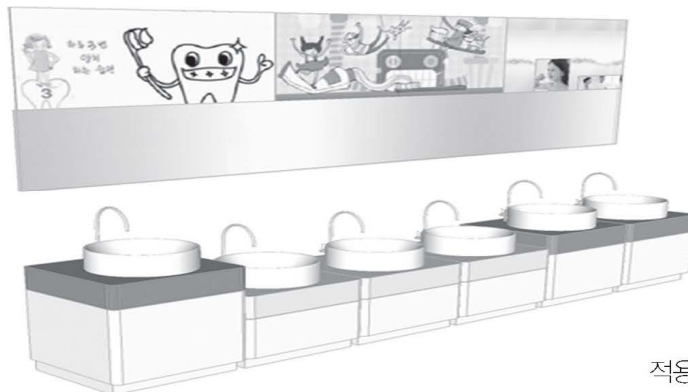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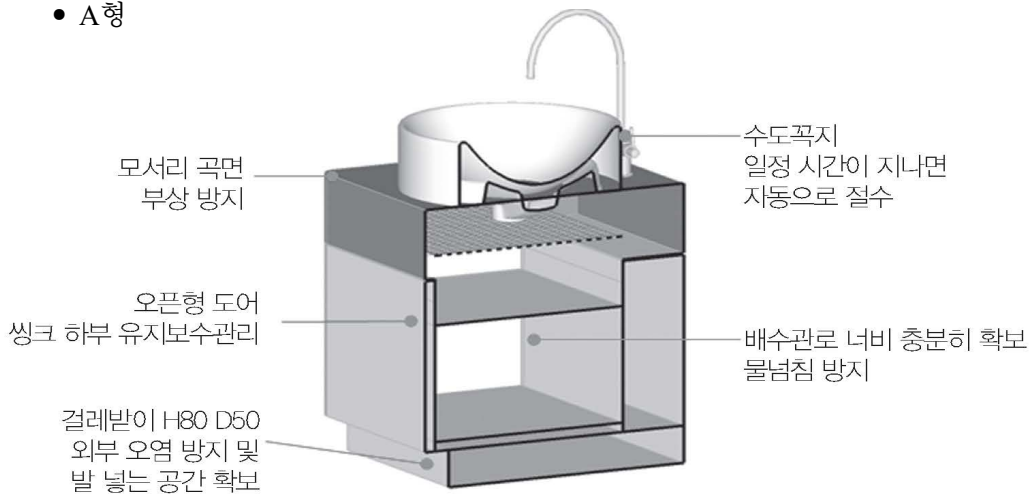


## 4 양치시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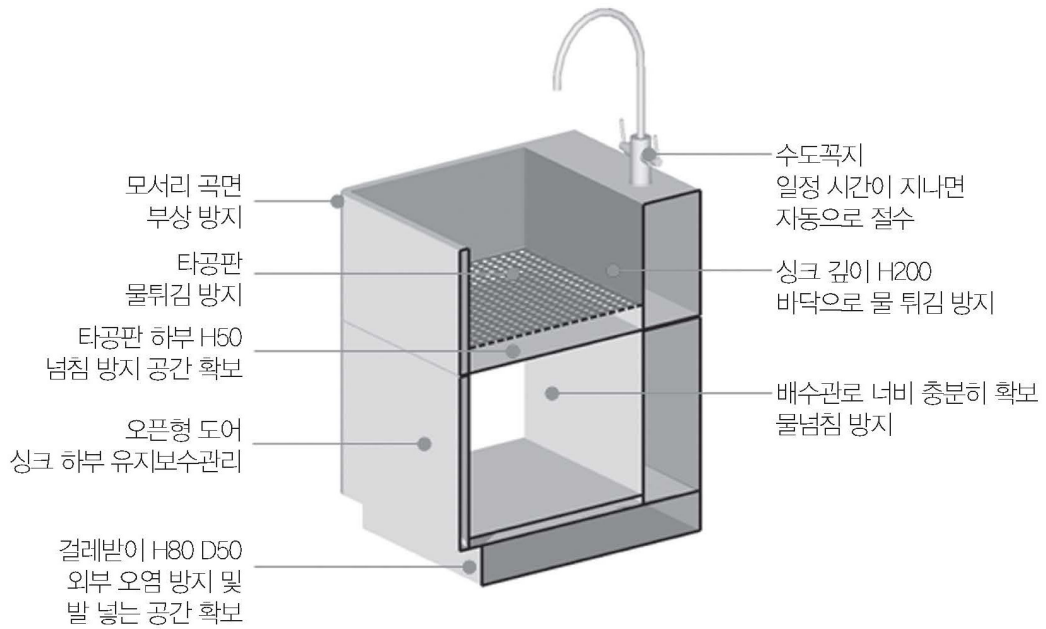
※ 설계 : 건축가 이현호(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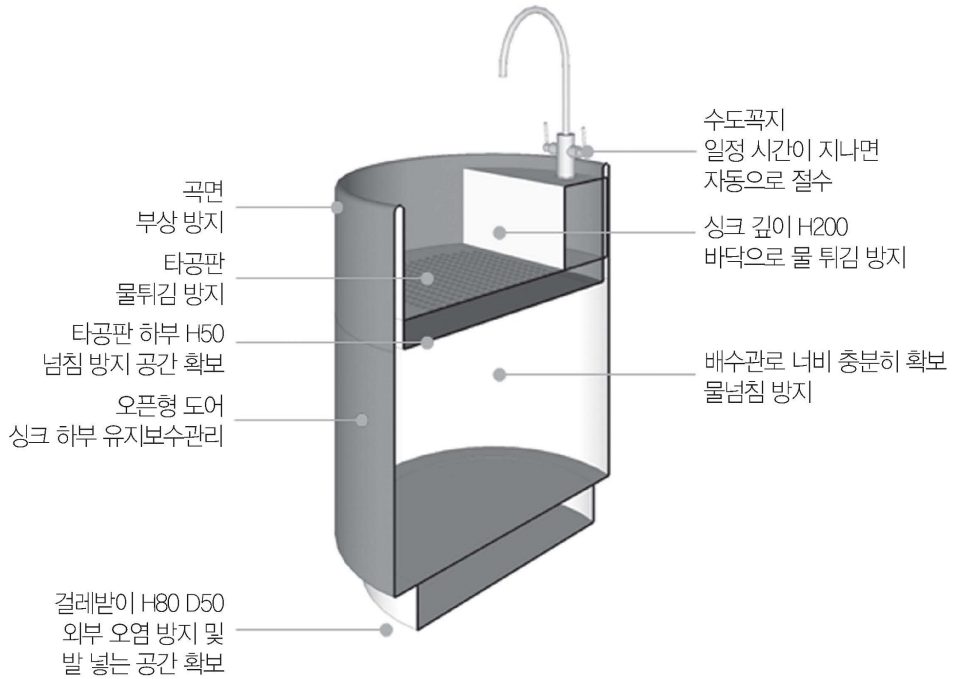


적용이미지

• B형



• 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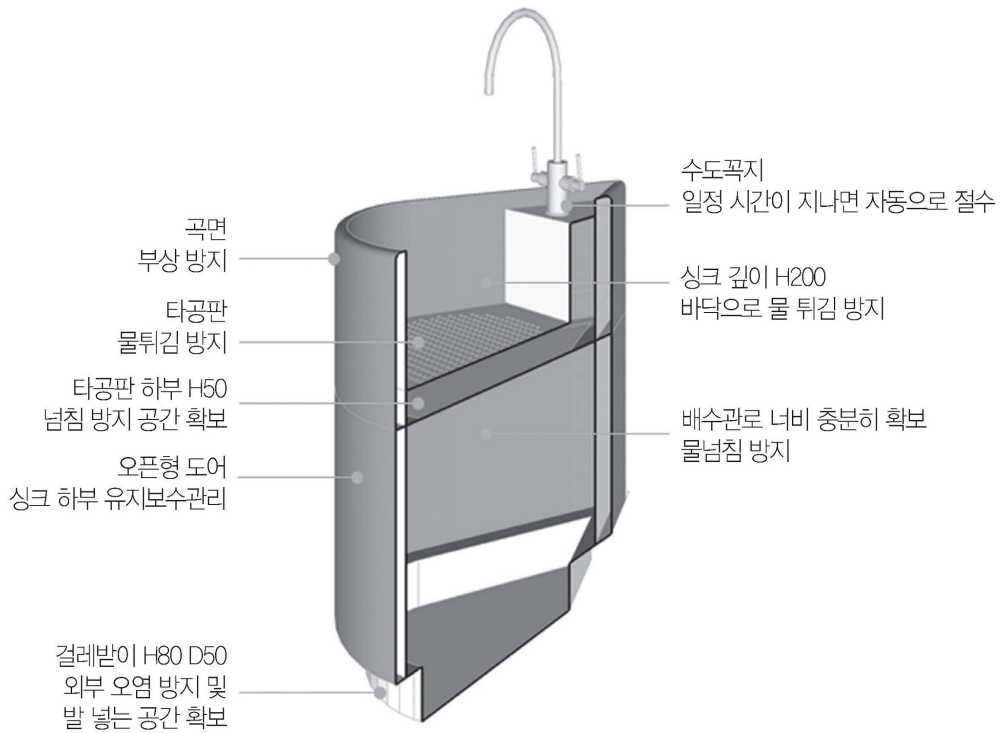


정면도

R형 2ea / Y형 2ea / G형 1ea / 보관형 2ea /  
포스터형 2ea / 의자형 1ea / 거울+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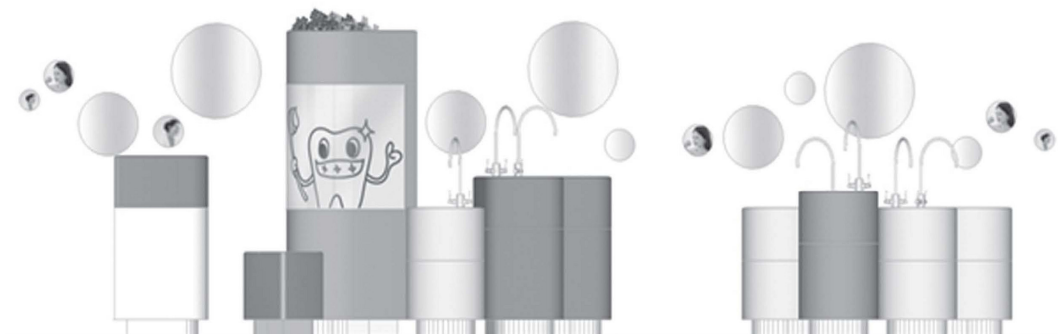


• D형(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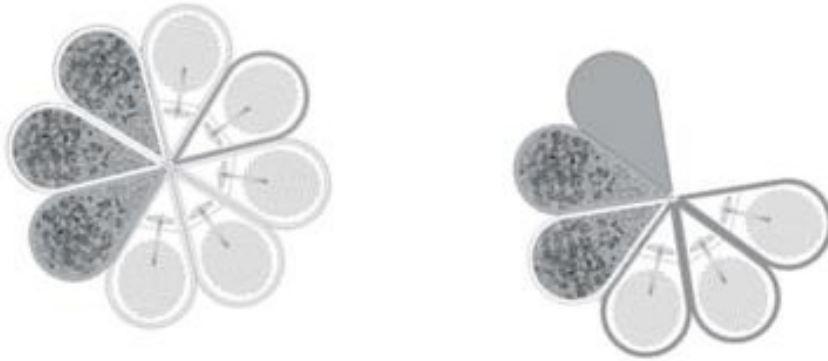
정면도

R형 2ea / Y형 4ea / G형 1ea / 보관형 1ea / 포스터형 1ea / 의자형 1ea / 거울+사진



**평면도**

R형 3ea / Y형 4ea / G형 1ea / 보관형 2ea /  
포스터형 5ea / 의자형 2ea / 거울+사진



칫솔, 치약, 컵 보관  
깊이 H150  
(화분겸용)

곡면처리

보관형  
Blue  
H680  
H850



화분  
깊이 H300

포스터 부착

포스터형  
Orange  
H1450  
H1700

※ 요청 시 도면 제공

## VI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 시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4524)	02-2133-7587 (02-2133-0725)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7545)	051-888-3364 (051-888-3319)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8층(41911)	053-803-1438 (053-803-4069)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08 호) (21999)	032-440-1593 (032-440-8705)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61945)	062-613-3332 (062-613-3329)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35242)	042-270-4842 (042-270-4809)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44675)	052-229-3534 (052-229-3519)
경기도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11780)	031-8030-3282 (031-8030-4015)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033-249-2684 (033-249-4038)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28515)	043-220-3123 (043-220-3119)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32255)	041-635-2653 (041-635-3603)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58564)	061-286-6033 061-286-4779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54968)	063-280-4674 (063-280-2479)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36759)	054-880-3788 (054-880-3829)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51154)	055-211-4931 (055-211-401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63122)	061-710-2932 (064-710-291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강길 16 (30023)	044-301-2111 (044-301-2119)

| 서울특별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02-2133-7587 (02-2133-0725)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 길 36 (03035)	02-2148-3638 (02-2148-5839)
중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 길 16 (04611)	02-3396-6485 (02-3396-9076)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04390)	02-2199-8113 (02-2199-5830)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 길 10 (04706)	02-2286-7067 (02-2286-7065)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05026)	02-450-1949 (02)3425-1735)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02565)	02-2127-5362 (02-3299-2642)
종랑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종랑구 봉화산로 179 (02043)	02-2094-0137 (02-490-4529)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02751)	02-2241-6009 (02-2241-6616)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897 (01145)	02-901-7666 (02-901-7609)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 길 117 (01395)	02-2091-4659 (02-2091-6281)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01689)	02-2116-4370 (02-2116-4647)
은평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03384)	02-351-8768 (02-351-5682)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03718)	02-330-8932 (02-330-1811)
마포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03937)	02-3153-9171 (02-3153-8998)
양천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9 (08095)	02-2620-3868 (02-2620-4409)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61 (07560)	02-2600-5968 (02-2620-0507)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8 길 66 (08299)	02-860-2425 (02-860-2653)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시흥대로 73 길 70 (08611)	02-2627-2854 (02-2627-2105)
동작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 길 42 (06963)	02-820-1437 (02-820-9496)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2 동 4 층 (08832)	02-879-7205 (02-879-7852)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06750)	02-2155-8109 (02-2155-8196)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06088)	02-3423-7218 (02-3423-8903)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05552)	02-2147-3549 (02-2147-3898)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05397)	02-3425-6784 (02-3425-7273)

### | 부산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47545)	051-888-3364 (051-888-3319)
중구보건소	보건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 1가) (48926)	051-600-4499 (051-600-4799)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로 30 (49233)	051-240-4874 (051-240-4799)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수정동) (48781)	051-440-6526 (051-440-6550)
영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청학동) (49011)	051-419-4886 (051-419-4909)
부산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8 번길 36 (범천동) (47357)	051-605-6086 (051-605-5999)
동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187 번길 56 (명륜동) (47741)	051-550-6766 (051-550-6749)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 남구보건소 (대연동) (48452)	051-607-6430 (051-607-6409)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89 번길 9 덕천보건지소 (46555)	051-309-7077 (051-309-7079)
해운대구보건소	반송지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 반송보건지소 (48000)	051-749-6988 (051-749-5798)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127 번길 2 (49432)	051-220-5931 (051-220-5719)
금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별관 4층 (46274)	051-519-5044 (051-519-5059)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811 번길 10 (46720)	051-970-3466 (051-970-4799)
연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47605)	051-665-5452 (051-665-479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수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광안동) (48247)	051-610-5695 (051-610-4799)
사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46985)	051-310-4796 (051-310-4799)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46077)	051-709-4821 (051-709-4818)

**| 대구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8 층(41911)	053-803-1438 (053-803-4069)
중구보건소	보건과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45 (41901)	053-661-3908 (053-661-3129)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9( 41143)	053-662-3126 (053-662-3136)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 257 (41777)	053-663-3183 (053-663-3182)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남구 영선길 34 (42424)	053-664-3613 (053-664-3669)
북구보건소	보건건강과	대구광역시 북구 성북로 49 (41550)	053-665-3288 (053-665-3289)
수성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3 (42086)	053-666-4867 (053-666-5891)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42731)	053-667-5637 (053-667-5639)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130 길 17 (43003)	053-668-3825~7 (053-282-7598)

**| 인천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208 호) (21999)	032-440-1593 (032-440-8705)
중구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 번길 21 (22309)	032-760-6076 (032-760-6018)
동구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 (22510)	032-770-5722 (032-770-5709)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22136)	032-880-5443 (032-880-5399)
연수구	보건행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미로 13 (21915)	032-749-8045 (032-749-804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남동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21589)	032-453-6023 (032-453-5119)
부평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1 (21359)	032-509-8258 (032-509-8658)
계양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21067)	032-430-7875 (032-551-5774)
서구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22726)	032-560-5048 (032-560-2803)
강화군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총렬사로 26-1 (23037)	032-930-4033 (032-930-3642)
옹진군	건강증진과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22193)	032-899-3144 (032-899-3399)

### | 광주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1945)	062-613-3332 (062-613-3329)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61466)	062-608-3326 (062-226-8051)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61928)	062-350-4167 (062-350-4709)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61687)	062-607-4462~3 (062-607-4406)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5 (61217)	062-410-8892 (062)574-8807
광산구보건소	우산건강생활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67 (62367)	062-960-3812 (062-960-3765)

### | 대전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35242)	042-270-4842 (042-270-4809)
동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34691)	042-251-6164 (042-623-8537)
중구보건소	건강관리담당	대전광역시 중구 삼성로 63(문화동) (35011)	042-288-8062 (042-228-8971)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74(만년동) (35203)	042-288-4547 (042-288-5930)
유성구보건소	예방의약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박산로 177 (34174)	042-611-5052 (042-611-5132)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8 번길 55(석봉동) (34319)	042-608-5459 (042-608-3851)

**| 울산광역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44675)	052-229-3534 (052-229-3519)
중구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팀)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25 (44495)	052-290-4371 (052-290-4319)
남구보건소	건강행복과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2 (44698)	052-226-2500 (052-226-2509)
동구보건소	보건소 (건강지도팀)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44021)	052-209-4069 (052-209-4079)
북구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44248)	052-241-8281 (052-241-8109)
울주군보건소	보건과 (건강증진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항교 1 길 67-12 (44950)	052-204-2897 (052-204-2719)

**| 경기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경기도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11780)	031-8030-3282 (031-8030-4015)
가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12413)	031-580-2842 (031-580-2559)
과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13806)	02-2150-3865 (02-2150-1540)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 번길 28 (10460)	031-8075-4041 (031-968-0217)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10410)	031-8075-4110 (031-908-1291)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방문보건팀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54 (10340)	031-8075-4186 (031-976-2040)
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194 (12739)	031-760-2143 (031-760-1427)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구리시 권원대로 34 번길 84 (11922)	031-550-8660 (031-550-2560)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01 (15818)	031-390-8968 (031-461-0876)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08 (10111)	031-980-5022 (031-980-5459)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제 2 청사 (12284)	031-590-2558 (031-590-2569)
남양주시 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1 로 30-39 (12066)	031-590-6977 (031-590-699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67 (11344)	031-860-3392
부천시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10 번길 16 (14575)	032-625-4454 (032-625-4409)
부천시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73 (14692)	032-625-4260 (032-625-4259)
부천시 오정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72 (14434)	032-625-4377 (032-625-4359)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 (13496)	031-729-3979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13346)	031-729-4038 (031-729-3839)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 (13200)	031-729-4056 (031-729-4899)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0 (16626)	031-228-6412 (031-228-6809)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16703)	031-228-8824 (031-228-8809/8818)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 (16295)	031-228-5829 (031-228-5809)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6 (16463)	031-228-7778 (031-228-7620)
시흥시보건소	건강도시과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14904)	031-310-5848 (031-310-2874)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정왕보건지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 번길 19 (15055)	031-310-5904 (031-310-5949)
안산시 단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15396)	031-481-6760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검사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 길 5 (15585)	031-481-5996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74 번길 18 (17596)	031-678-5764 (031-678-5709)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의약관리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 번길 41 (14047)	031-8045-4860 031-8045-6528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14035)	031-8045-3206 (031-8045-6527)
양주시보건소	구강보건팀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11498)	031-8082-7161 (031-8082-7149)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12546)	031-770-3484 (031-770-2848)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 번길 14 (12628)	031-887-3257 (031-886-7896)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9 (18131)	031-8036-6042 (031-8036-8923)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 번길 11 (16969)	031-324-6958 (031-324-6939)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16835)	031-324-8908 (031-324-8939)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17019)	031-324-4931 (031-324-2989)
의정부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11649)	031-870-6062 (031-873-7719)
의왕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34 (16076)	031-345-3582 (031-345-2989)
이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153 번길 13 (17353)	031-644-4056 (031-632-7419)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실)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13 (10924)	031-940-5565 (031-940-5139)
평택시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평택시 평택 5 로 56(비전동) (17901)	031-8024-4411 (031- 8024-8609)
평택시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17730)	031-8024-7218



| 강원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24266)	033-249-2684 (033-249-4038)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35 (24358)	033-250-4687 (033-250-4306)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26417)	033-737-4828 (033-737-4548)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 17 번길 38 (25604)	033-660-3089
동해시보건소	보건사업팀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00-2 (25769)	033-530-8473 (033-530-2738)
태백시보건소	진료방문담당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05 (26027)	033-550-3851 (033-550-2941)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 (24826)	033-639-1527 (033-639-2554)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76 (25929)	033-570-4671 (033-570-4167)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 (25135)	033-430-4045 (033-435-1566)
횡성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	강원도 횡성군 횡성로 379 (25234)	033-340-5654 (033-340-5608)
영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26234)	033-370-2583 (033-372-2190)
평창군보건소의료원	보건사업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25374)	033-330-4846 (033-330-4809)
정선군보건소	진료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26127)	033-560-2755 (033-563-4000)
철원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24037)	033-450-4152 (033-456-5033)
화천군보건소의료원	진료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24119)	033-440-2874 (033-440-2899)
양구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24522)	033-480-2783 (033-480-2546)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 번길 34 (24633)	033-461-2242 (033-460-2429)
고성군보건소	예방의약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24736)	033-680-3968
양양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25031)	033-670-2538 (033-670-2558)

충청북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28515)	043-220-3123 (043-220-3119)
청주시상당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 (28806)	043-201-3184 (043-201-9041)
청주시서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 (28565)	043-201-3276 (043-201-321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청주시흥덕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 번길 46 (28365)	043-201-3358 (043-201-3399)
청주시청원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 3 로 238 (28125)	043-201-3412 (043-201-3489)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충북 충주시 사직산 21 길 34 (27408)	043-850-3518 (043-850-3509)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42 (27152)	043-641-3113 (043-641-3029)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50 (28943)	043-540-5623 (043-544-2574)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 길 10 (29032)	043-730-2125 (043-731-6344)
영동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충북 영동군 반곡동길 7 (29150)	043)740-5612 (043-742-4000)
증평군보건소	보건진료팀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27948)	043-835-4220 (043-835-4209)
진천군보건소	진료팀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 1 길 11-8 (27832)	043-539-7402 (043-537-0751)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28033)	043)830-2331 (043-830-2338)
음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49 (27705)	043-871-2080 (043-871-1951)
단양군보건소	보건진료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 (27013)	043-420-3234 (043-420-3231)



| 충청남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건강증진팀)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32255)	041-635-2653 (041-635-3603)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31131)	041-521-5043 (041-521-2659)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1162)	041-521-5951 (041-521-2569)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3 (32542)	041-840-2144 (041-840-2341)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33493)	041-930-5962 (041-930-5959)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 번길 20 (31521)	041-537-3459 (041-537-3379)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6 로 6 (31997)	041-661-8102 (041-661-6582)
논산시보건소	건강도시지원과 (건강정책팀)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 (32993)	041-746-8092 (041-746-8093)
계룡시보건소	진료팀	충남 계룡시 장안로 54 (32823)	042-840-3516 (042-840-3569)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충남 당진시 서부로 56 (31777)	041-360-6091 (041-360-6029)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충남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32726)	041-750-4355 (041-751-6515)
부여군보건소	지역보건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33140)	041-830-8663 (041-830-8700)
서천군보건소	진료검진팀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33638)	041-950-6740 (041-950-6779)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 길 54 (33324)	041-940-4531 (041-940-4508)
홍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32236)	041-630-9282 (041-630-9860)
예산군보건소	진료팀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32435)	041-339-6032 (041-339-6009)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32148)	041-671-5331 (041-675-4105)

### | 전라남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58564)	061-286-6033 061-286-4779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목포시 원산로 45 번길 5 (58714)	061-270-8925 (061-270-8586)
여수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전남 여수시 시청서 4 길 47 (59674)	061-659-4260 (061-659-5839)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순천시 중앙로 232 (57938)	061-749-6921 (061-749-4695)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나주시 풍물시장 2 길 57-32 (58274)	061-339-2165 (061-339-2920)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57741)	061-797-4040 (061-797-4056)
담양군보건소	주민건강정책과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57335)	061-380-2535 (061-380-3990)
곡성군보건의료원	진료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57542)	061-360-8932 (061-363-3000)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팀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57647)	061-780-2045 (061-783-0679)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계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 3 길 5 (59542)	061-830-6631 (061-830-5597)
보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53 (59455)	061-850-5697 (061-850-8516)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총로 62 (58122)	061-379-5325 (061-379-5380)
장흥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9 (59327)	061-860-6485 (061-860-0597)
강진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59240)	061-430-3573 (061-430-3539)
해남군보건소	보건행정팀	전남 해남군 해남로 46 (59038)	061-531-3721 (061-530-5597)
영암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58421)	061-470-6555 (061-470-6576)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58532)	061-450-5029 (061-450-5134)
함평군보건소	진료의약계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57153)	061-320-2511 (061-320-3527)
영광군보건소	보건행정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4 길 17 (57043)	061-350-5949 (061-353-5565)
장성군보건소	건강생활팀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 11 길 13 (57220)	061-390-8397 (061-390-7597)
완도군보건의료원	진료팀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59108)	061-550-6709 (061-550-6787)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 1 길 40-9 (58922)	061-540-6905 (061-540-6083)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8827)	061-240-8812 (061-240-8892)



## | 전라북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전라북도	건강안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 (54968)	063-280-4674 (063-280-2479)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55038)	063-281-6321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북 군산시 수송동로 58 (54091)	063-460-3265 (063-460-3254)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전북 익산시 무왕로 975 (54543)	063-859-4887 (063-859-4219)
정읍시보건소	건강재활과	전북 정읍시 수성 1로 61 (56177)	063-539-6085 (063-539-6532)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 (55766)	063-620-7957 (063-636-5931)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전북 김제시 성산길 138 (54385)	063-540-1393 (063-540-1371)
완주군보건소	지역보건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 8로 10-10 (55334)	063-290-3027 (063-290-3020)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전북 진안읍 진무로 1189 (55451)	063-430-8515 (063-433-9999)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55515)	063-320-8355 (063-320-8239)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55631)	063-350-3177 (063-350-3183)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55927)	063-640-3135 (063-640-3117)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135 (56049)	063-650-5246 (063-650-5229)
고창군보건소	진료의약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90 (56442)	063-560-8774 (063-560-8779)
부안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56314)	063-580-3813 (063-580-4672)

|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6759)	054-880-3788 (054-880-3829)
포항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37878)	054-270-4064 (054-284-2819)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37607)	054-270-4164 (054-270-4120)
경주시보건소	진료팀	경북 경주시 양정로 300 (38099)	054-779-8644 (054-760-7531)
김천시보건소	중앙보건지소 지역보건팀	경북 김천시 중앙공원길 21 (36596)	054-421-2826 (054-435-9083)
안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65 (36694)	054-840-5966 (054-840-5938)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관리담당	경북 구미시 선산대로 111 (39192)	054-480-4056 (054-480-4069)
구미시 선산보건소	건강출산담당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39112)	054-480-4137 (054)480-4129
영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번길 19 (36132)	054-639-5776 (054-639-6441)
영천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북 영천시 옛군청 1 길 31 (38849)	054-339-7794 (054-330-6719)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 (37183)	054-537-5245 (054-537-6520)
문경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진료담당	문경시 점촌 1 길 9 (36971)	054-550-8129 (054-550-6479)
경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8 (38616)	053-810-6636 (053-853-3445)
군위군보건소	보건의료담당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39020)	054-380-7450 (054-380-6479)
의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37343)	054-830-6693 (054-833-0661)
청송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경북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 (37433)	054-870-7242 (054-873-7104)
영양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36540)	054-680-5143 (054-680-5129)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25021)	054-730-6476 (054-730-6779)
청도군보건소	진료담당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38329)	054-370-2658 (054-370-2679)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40138)	054-950-7916 (054-955-3374)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12 (40023)	054-930-8134 (054-930-819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칠곡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 길 30 (39872)	054-979-8211 (054-979-8278)
예천군보건소	진료팀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36822)	054-650-6431 (054-650-6469)
봉화군보건소	보건진료팀	경북 봉화군 봉화로 1203 (36238)	054-679-6752 (054-679-6759)
울진군보건소	방문보건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 8 길 61-8 (36324)	054-789-5042 (054-789-3359)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40217)	054-790-6824 (054-790-6819)

### |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51154)	055-211-4931 (055-211-4019)
창원시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 번길 9 (51444)	055-225-5863 (055-225-4766)
창원시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51742)	055-225-5968 (055-225-4769)
창원시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51629)	055-225-6193 (055-225-4771)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52732)	055-749-6694 (055-749-5719)
통영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통영시 무전동 안개 4 길 108 (53038)	055-650-6143 (055-650-6199)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52539)	055-831-3532 (055-831-6041)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경남 김해시 분성로 227 (50958)	055-330-7959 (055-330-4459)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삼문동) (50437)	055-359-7084 (055-359-7095)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거제시 수양로 506 (양정동) (53236)	055-639-6214 (055-639-6129)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양산시 삼량로 169 번지(중부동) (50629)	055-392-5114 (055-392-5109)
의령군보건소	진료민원담당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 길 16 (52151)	055-570-4053 (055-570-4018)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 4 길 10 (52046)	055-580-3226 (055-580-3109)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창녕군보건소	건강관리과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 2 로 1189-35 (50317)	055-530-6229 (055-530-6210)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 번길 103-3 (52934)	055-670-4034 (055-670-4019)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52413)	055-860-8717 (055-860-8799)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52333)	055-880-6703 (055-880-6620)
산청군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52225)	055-970-7561 (055-970-7519)
함양군보건소	출산지원담당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50039)	055-960-4606 (055-964-9024)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50142)	055-940-8371 (055-940-8309)
합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50232)	055-930-3716 (055-930-3699)

| 제주특별자치도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63122)	061-710-2932 (064-710-2919)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64 (63219)	064-728-8461 (064-728-4079)
제주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63028)	064-728-4132 (064-728-4129)
제주시 동부보건소	보건행정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4 길 6 (63357)	064-728-4174 (064-728-4209)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1 번길 52 (63584)	064-760-6041 (064-760-601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27 (63620)	064-760-6124 (064-764-3945)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5 번길 12 (63513)	064-760-6222 (064-760-6219)

| 세종특별자치시 구강보건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

구 분	부서명	도로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Fax)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건강길 16 (30023)	044-301-2111 (044-301-2119)





##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구강보건 ]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	044-202-2841 (보건복지부) 02-3781-350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mohw.go.kr">http://www.mohw.go.kr</a> <a href="http://www.khealth.or.kr">http://www.khealth.or.kr</a>
인쇄처	대승사 044-868-2027 / yyg1017@hanmail.net